

인권에 대한 · 인권을 위한 · 인권을 통한
2010 Wee Project 상담교사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후원 : 한국아동권리학회

|| 일시 · 장소 ||

● 중부권

일시 : 2010. 9. 30(목)~10. 1(금)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 영남권

일시 : 2010. 10. 7(목)~10. 8(금)

장소 : 대구은행연수원

● 호남권

일시 : 2010. 10. 14(목)~10. 15(금)

장소 : 전라남도교원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일정

일자	시간	제목	주요내용	진행자
첫째날 (목)	10:00~10:30	등록	등록 및 안내 숙소배정 및 자료배부	담당자
	10:30~11:00	개회	인사말씀 / 오리엔테이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11:00~12:00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소개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12:00~13:00	중식		
	13:00~16:00	인권 감수성	몸풀기 마음열기 내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권	이기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배경내/고은채 (인권교육센터 들)
	16:00~18:00	아동인권	상담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존중	김경희 (한국아동권리학회)
	18:00~19:00	석식		
	19:00~22:00	학교인권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해법찾기	이필우 (마산내서여자 고등학교)
둘째날 (금)	7:30~8:30	조식		
	9:00~12:00	인권상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비폭력 대화	김미경 (한국비폭력센터)
	12:00~13:00	중식		
	13:00~15:30	학교인권	인권친화적 선도 프로그램과 상담교사의 역할	임동헌 (광주청소년 인권교육연구회)
	15:30~16:00		설문조사 및 마무리	인권교육 과장



목 차

- ❖ 내안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권(인권·인권교육·인권 감수성)..... 1
이 기 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 ❖ 권리의 관점으로 본 상담..... 43
김 경 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 ❖ 바람직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해법 찾기..... 57
이 필 우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 ❖ 몸과 마음 돌보기..... 91
김 미 경 (한국비폭력센터)
- ❖ 인권친화적인 선도프로그램 개발..... 105
임 동 현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 ❖ 부 록..... 129
 - 〈부록 1〉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유엔 아동권리 협약..... 131
 - 〈부록 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학생) 관련 주요 결정례..... 139
 - 〈부록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183

내안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권 (인권 · 인권교육 · 인권 감수성)

이 기 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내안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권 (인권·인권교육·인권 감수성)

이 기 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1. 인권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선생님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말처럼 대답하기 쉽고도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간단히 정의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 하기는 쉬워도 인권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절실하게 생각할 만큼 올바르게 정의 내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를 망각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노동과 임금체불에 관한 기사가 나오거나 거리에서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권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과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로는 느끼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은 단순히 인권을 “사전적 의미”로 정의 내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인터넷을 통해 모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체벌에 대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각이 깊고 교육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신 분이었지만 불행히도 체벌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체벌”은 “필요악”이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한 체벌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당연한 듯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 수준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인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 왜 인권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인권의 정의나 권리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지식 정도



로 생각한다면 학교현장에서 인권을 교육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권이 진정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그리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외면해 버린 채 가르치는 인권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 암기해야 할 의미 없는 단어가 될 뿐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국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개인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¹⁾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르기 위한 최후의 보호막”이 아니라, 마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 이후에나 덤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노말 연구소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인권 의식 수준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인권 침해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두려움과 복종심으로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전혀 인권의식을 가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권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두려움이나 이해 부족, 패배주의 등으로 인권 침해를 자신과 밀접한 사건으로 연관시켜 생각하는 의식이 부족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 자신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실천을 하기보다는 인권 단체나 그 외 적극적인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사회의 사회적인 합의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인권 침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스스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실천적인 인권 의식을 기초로 스스로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의 단계”입니다.

1) 개인의 자유의 제한과 경제 발전이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의 결론입니다. Sen (1999). Sen과 Dreze (1989)는 오히려 민주적인 정부와 자유언론을 가진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기근이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인권 의식을 네 단계로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은 아직 두 번째 단계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 의식이 높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인권 침해 문제 산적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남녀 차별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 침해 문제는 결국, 우리들 자신의 낙후된 인권 의식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실천적인 의식”의 문제이어야 합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권도 없다?

15년 전 제가 아직 대학생 시절에 저는 모 인권 단체의 인권 운동가 분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5·18 책임자 처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분은 5·18 광주 학살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열변을 토하면서 “인권은 인간에게만 이야기되는 것이므로 인간 같지 않은 자(학살 책임자)들에게는 인권도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감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광주 학살의 문제에 대한 분노에 찬 성토일 수 있었으나 저는 그 말을 꼼꼼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 천명을 학살한 자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이 없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냐? 라며 체벌 찬성의 주장을 펴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은 걸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권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은 앞서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피부색이 다르거나 문화와 종교가 다르기 이유로 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 사회의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인권이란 개인주의를 기초한 서양적 사고에서 발생한 것이며 우리 고유의 공동체 문화 전통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 가족공동체”,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체의 규율이 무너진 현대사회”에 대해 개탄하며 인권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경향



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권위가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인권 교육이 아이들에게 개인주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선생님들의 생각도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인권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권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집단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인권의 영역에는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누려야 할 권리, 한 사회의 공동체가 가지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게다가 인권은 모든 권리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권리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어떠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모임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집단의 문화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 집단 내의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하고 신체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말이나 특정한 문화적 종교적인 이유로 개개인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실을 문화적 상대성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견해입니다.

간혹 이슬람권에서의 남녀 차별이나 불교의 윤회설을 기반으로 한 빈부의 인정, 유교의 칠거지악(七去之惡),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동체주의 등을 인권침해가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과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²⁾, 이러한 주장들처럼 문화적 상대성이 인권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권 억압적 유산들은 사실 동양문화나 특정 종교를 대표하거나 어떠한 문화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보다. 남성 중심의 지배와 권력자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교 문화의 불 살생(不殺生)이나 비폭력, 유교의 중용(中庸)의 전통과 같은 동양적인 인권옹호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에서 다양한 문화의 상대성을 구현하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2) 이것을 이른바 “아시아적 인권론”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UN 인권대회를 대비하여 늘 인권문제로 비난의 표적이 되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방콕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특수성에 따라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아시아적 인권론”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은 서구 문화적 인권의식에 의해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비난들은 모두 “서구 국가들의 아시아의 정치적 지배를 위한 음모”로까지 간주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지금까지 서구 사회의 오리엔탈리즘이 부과한 우월한 서양과 열등한 동양의 구도를 역전하여 열등한 개인주의 중심의 서구와 우월한 공동체주의의 아시아를 재인식시키는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허구의 논리입니다.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이 서구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아시아에서 인권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리엔탈리즘의 피해 의식에서 나온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적 인권”이란 모든 인권 영역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지지와 옹호가 뒷받침 될 수 있는 인권, 아시아의 문화 속에 있는 인권적 전통을 찾아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우리”는 결국 자유로운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문화 속에 “나”중심 문화의 권리가 있고, “나” 중심 문화 속에 “우리”문화의 권리가 있다”라는 Johan Galtung(유럽평화 대학 평화학 교수)의 말처럼 인권은 어떤 문화나 사회 공동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빵이나 자유냐?

1966년 유엔에서는 인권 협약이 사회권 영역인 A협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 한국은 1990년 7월 10일 협약 국이 됨)과 자유권 영역인 B협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 한국은 1990년 7월 10일 협약 국이 됨)으로 각각 분리되어 체결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협약의 분리 체결은 냉전의 산물이었습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권 실행의 부진함을 논박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참정권과 재산권 등이 보장되지 않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자유권 제한을 문제삼았습니다.

양 체제의 국가들이 서로 논박한 것처럼 인권 항목 중에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회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 경제적 권리, 즉 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권만의 인정하는 것은 인류의 안녕과 복리라는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시책들을 보면 사회권을 마치 권리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무한 경쟁과 부의 편중을 조장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공평에 의한 구조적인 빈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세계 극빈 인구 12억 명중 9억 명의 절대 빈곤의 인구가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통계자료(2000년)를 보더라도 98년 1월 말 만 명 정도였던 결식 아동 수가 2000년에 15.3배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실업율과 저임금·불완전고용이라는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영역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 기초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서 사회적 보장을 약속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인권의 항목은 서로 대립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A 협약이니 B 협약이니 하며 인권의 내용을 구분하고 우선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인권의 관점이 아닙니다. 사회권과 자유권은 인류의 인권 옹호의 역사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을 보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권은 사회적 특수성에 의해 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가거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만약 생명을 가진 인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의 생명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 단체들이 사형제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권의 특성 때문입니다.

최근 신용카드 문제와 함께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없지만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인권적인 발상에서 나온,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도 모든 인간은 그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행동과 생각을 제한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회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뿐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생활환경, 일터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 보장 제도가 튼실하게 뿌리내리는 것은 인권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든 사회가 짊어질 책임이며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인권은 인간임을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옹호는 사회적 강자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막으로서의 인권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부터 코소보 내전까지 전쟁의 피해 중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 선언이나 1989년의 아동권리 협약에서 이른바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안전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여전히 기아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조약의 성립되는 과정³⁾이나 1995년 베이징 선언 및



행동계획에 이르러서야 여성 아이들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 중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불가분의 요소임을 인정받았던 것, 그리고 성적 소수자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와 주변부의 사람들이 국가권력과 사회 제도라는 커다란 틀에서의 인권 영역 뿐 아니라 관습, 전통, 규범과 가족제도 등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인권 침해에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⁴⁾

우리 사회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아이들의 문제, 코소보 등지의 인종말살, 아프리카 각 국의 내전에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살인과 강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현실⁵⁾은 단순히 이러한 인권 침해를 여타의 다른 인권문제처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구적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호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인권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단순히 약자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인권 보호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사회 권력을 가진 강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으로 더욱 주도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의 기준

인권의 보장은 현대 사회에서 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수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 제정의 위험성에 있습니다.⁶⁾

즉 인권 침해적인 법 제정의 가능성은 어느 사회라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80년대

- 3) 1946년부터 시작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현장 작성작업은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1959년 11월 20일에 '아동의 권리선언'의 작성과 이후 30년이 지난 후 1989년에 이르러서야 아동권리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 4) Johan Galtung은 제3세계, 인권, 사회주의 붕괴'라는 세 가지를 초점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조망하며 지금까지 인권이 개인의 권리로 국한되어 인식됨으로써 개인이 아닌 집단, 즉 성별, 세대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권리는 관심 밖의 영역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5) 2003년 미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에 의하면 우간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부녀자 등 약 5,000명의 민간인이 납치·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중 남자는 반군 병사로, 여자는 성 노예로 이용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약 1만4천명에 달하는 우간다 북부 글루 지역 사람들은 반군들의 납치와 인신매매로 부녀자들은 낙태와 에이즈 등 각종 성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린이들도 소년병으로 충원돼 민간인 학살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 6) 김종섭 교수에 따르면 법은 그 성격상 통치자나 지배 세력을 대변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민주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자체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의 판단 역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의 법이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우리 사회에 성문화된 법률적인 근거에 통해서만 보장되는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인권은 법률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초법적으로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제라도 국가 권력이 인권을 제한 할 경우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그에 알맞은 법 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사회 정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 권력은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국가 보안법의 존폐 유무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정치의 필수 전제 조건의 하나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인권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제한 당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⁷⁾

변화하는 세계 · 변화하는 인권

인권을 영어로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의 “Human Rights”로 표시하는 것은 인권이 단일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변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되어 온 권리임을 나타냅니다. 인권의 발전의 역사는 인권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역사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세기의 인권의 개념은 생존권과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이 그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를 들어와서 인권의 개념은 더욱 다양해지고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등으로 확장되어갔습니다.⁸⁾

역사적으로 볼 때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인권론은 자유권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언론, 결사, 사유재산, 종교, 투표의 자유와 고문의 금지, 법 앞의 평등, 등의 자유권이 중요한 인권이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제 1 세대 인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인권논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사회권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할 권리, 최소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권, 휴식권, 교육권, 사회보장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등이 그것입니다.(제 2 세대 인권) 20세기 후반이 되자 인권의 의미는 더욱 다양하게 확장됩니다. 개개인의 가치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단결권을 포함하는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알 권리, 소비자보

7)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이전부터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사항이었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해왔으며, 2003년 국가보안법 TFT 구성, 2003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4년도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적, 법적, 사회적 현실적 측면을 검토 한 후 2004. 8. 23 전위원회 의결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함.

8) 마샬(T.H. Marshall, 1950)에 의하면 18세기를 시민적 권리의 시대, 19세기를 정치적 권리의 시대, 20세기를 사회적 권리의 시대로 보면서 다양한 권리 항목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권, 정보접근권 등 현대 생활과 밀접한 권리들이 생겨 났습니다.(제3세대 인권)⁹⁾

이렇게 현대 사회의 인권 논의는 인권의식의 신장과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권 논의의 변화에 대하여 카렐 바삭(Karel Vasak)은 '인간권리 3단계론'을 제기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의 세 이상을 근거로 첫 번째 단계를 '자유'로 대표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평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논의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애(fraternity)'로 대표되는 단결 또는 연대(solidarity)에 대한 권리의 논의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생명공학과 유전자 복제라는 인류의 새로운 화두가 생겨나면서 단순히 전통적 인권론을 바탕으로 했던 “과학 발전과 그 혜택을 누릴 권리, 과학 연구의 자유”등의 권리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학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과학자의 사회적 윤리적 의무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¹⁰⁾

사회 변화에 따라 이렇게 인권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고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세계 인류의 인식들이 더욱 폭넓어 지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에까지 인권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논의의 변화가 인권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 변화와 과학의 발전 등이 계속 되어도 인권에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 존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인권교육

인권 교육의 세 가지 측면 (인권 교육의 기본 방향)

인권 교육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권 교육은 "인권과 관련한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능력과 인권 옹호의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교육활동이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의 인권 존중의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수 학습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아이들에게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이해시키고 인권이 소중한 것이며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익혀야 할 지식과 가치,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습과정은 아이들과 교육자 사이, 아이

9) 아울러 제 3세대 인권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권리, 지역 자치의 권리, 문화적 전통을 유지의 권리, 정체성을 가질 권리, 평화의 권리, 급진적 자원주권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10) 1999년 '세계과학회의(World Conference on Science)'의 '과학과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을 보면 특정 연구과제의 인도적, 사회적, 생태적 가치의 고려와, 양심에 따라 최후수단으로서 연구를 그만 둘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인권 교육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에 대한 교육 -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기르기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권리에 대해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의 가치를 깨닫고 옹호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인권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을 얼마나 쉽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할 것인가가 인권에 관한 교육의 궁극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 교육의 내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나 사회적·문화적 권리, 개인적·집단적 권리의 동등한 중요성을 부과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과거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받들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권리 영역까지를 포괄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인권을 통합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에 관한 교육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권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감적 이해
- 2)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공감적 이해
- 3) 다양한 인권의 영역에 대한 사례와 경험 중심의 이해
- 4) 인권 옹호를 위한 역사에 대한 이해
- 5) 인권 옹호의 필요성과 인권 옹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 6) 국내외의 인권 침해 문제와 나의 인권 침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
- 7) 국내외 인권 기구와 NGO의 역할에 대한 이해

2. 인권을 위한 교육 -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와 실천 능력 기르기

인권에 대한 지식과 사고 능력을 가지는 것과 인권을 옹호하는 적극적인 실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권에 대한 지식적 측면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인권 옹호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한 인권적 시민으로 육성시키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 교육이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의 함양과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교육이라고 할 때, 인권 교육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은 절대로 제외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권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인권 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습득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 교육은 먼저 아이들의 생활 영역에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 실천 사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견을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함께 공동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에서의 갈등 문제를 비폭력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민주적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인권 기구와 NGO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사회에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적,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 등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의 운영이나 학교 규칙의 제정, 학교 내 비인권적인 요소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과 구조를 만들어 아이들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인권을 통한 교육 -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권 존중 인권적 교육 환경의 구축

인권 교육이 교사와 아이들간의 수직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한 주입식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인권이란 개념을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은 인권 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인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교수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상호간의 동등한 관계가 아닌 교실 환경에서 인권 교육은 아이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식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민주화시키고 인권적인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공적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교사 스스로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와 학교 구조에서는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학교의 동등한 주인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중심, 관리자 중심의 교육제도가 변화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화되지 못한 채 시행되는 인권교육은 사실 공염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에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에서 시



작하여 인권적 문화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인권 교육에 대한 고민함으로써 아이들과 자신의 인권의 문제, 사회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인권의식 신장의 씨앗으로 움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인권 교육이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인권적인 소통과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학급 경영, 아이들과 만드는 인권 중심의 교실 공동체에 대한 노력은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서 인권의 의식을 신장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신장시키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인권 교육의 방법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까지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 교육 방법론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역 자료 센터(ARRC)와 엠네스티의 교육 방법을 제외하고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 중심의 방법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ARRC에서 제시하는 인권 교육의 기초 원리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험적

교육의 내용은 아이들이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과 그 상황 하에서 인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경험을 기반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활동중심적

인권 교육의 프로그램은 아이들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이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 문제제기적

인권 교육에서 문제제기는 아이들과 교사, 또는 아이들 상호 간의 토론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에 대해 스스로 의문점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 참여적

인권 교육에서의 토론은 개념의 명료화, 주제의 분석, 활동의 실행 등을 위해 공동체가 집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확장, 정당화, 그리고 반증할 수 있게 됩니다.



5. 변증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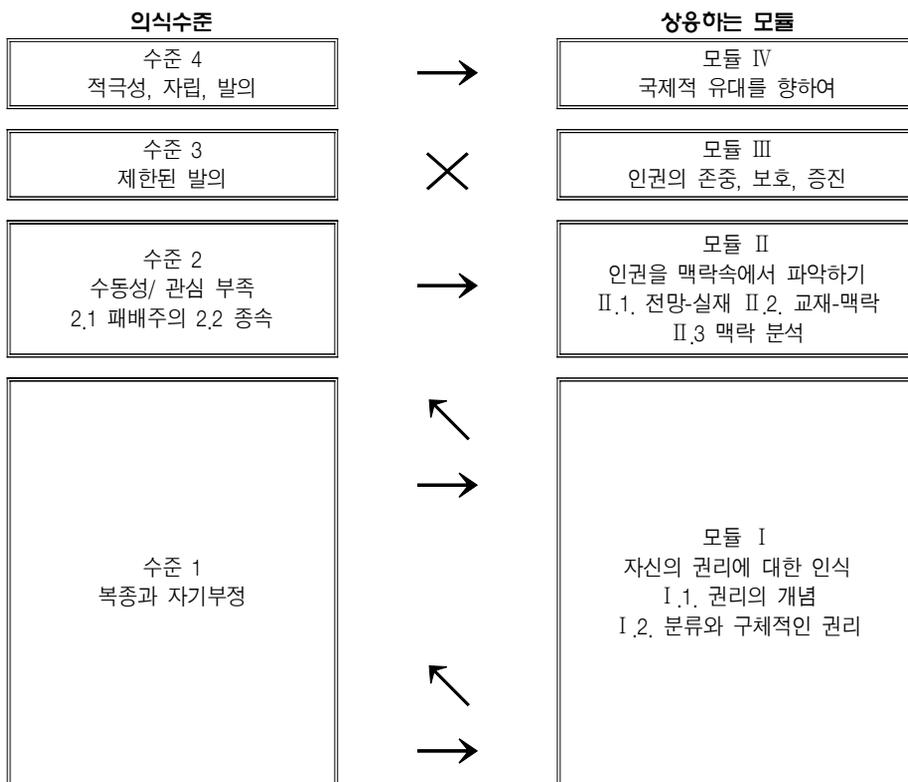
아이들이 얻은 사전 지식을 구체적인 인권 관련 사실, 자료, 통계 등(반명제)과 같은 다른 자료의 지식 비교하도록 스스로 종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6. 분석적

아이들에게 인권 관련 지식에 대하여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제기 함으로서 인권 관련 사건과 다른 사건의 연관성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편 엠네스티의 인권 교육의 학습 모듈은 기존의 필리핀 노말 연구소에서 제기한 인권 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권 교육의 인지들





그러나 이러한 인권 교육방법은 인권교육의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승미의 연구¹¹⁾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지적 측면의 인권 교육에서 공감적인 정서를 중심의 교육과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통합 될 때만이 인권 옹호의 행동으로 발달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지적 측면의 인권 교육은 공감적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과잉 공감의 문제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공감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인권 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인권 교육을 활성화 시켜 줌으로써 친인권적인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박상준의 연구¹²⁾은 인권 교육에서 행위성향” -인권 친화적 행위를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체득된 행위의 경향성-에 의한 육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인권친화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인지적인 측면의 인권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연구에서 중요한 지점은 습관화된 행동성향과 인권 교육에서 정서적인 부분이 인권의 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제 사면위원회 등에서 사용한 인지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인권 교육 방법론에서 좀 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는 인권 교육을 고민할 때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 성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세르비아 내전 등에서 일어난 인종 청소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개인이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기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 가지는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가 비 인권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사실 인지적 측면에서의 인권 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왕따 현상도 하나의 집단에 속해있는 개개인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집단 전체의 반복적으로 습관화된 문화적 양태 - 특정 소수에 대한 반인권적 정서와 성향들-에 의해서 인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질서 교육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체득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서 보듯이, 체험적 반복 학습을 통한 인권적 행동성향과 아이들에게 실제 현실에서 인권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만든 규칙에 대해 질서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구성원이 라도 쉽게 공감하고 따르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불량 서클 등에 가입된 학생이 다른 사회 법규에

11)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이승미 2000년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12) 행위성향 중심의 인권 교육 2002년 국가 인권 위원회 논문 가작



대해서는 거부하면서도 그 서클의 비논리적인 규정에 대해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공동체 안의 의식적 무의식으로 형성된 경향성(정서적 공감대)은 그 구성원의 행동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동체의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공동체일 경우에는 개개인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단 사이의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의해 공동체 전체의 운영에서는 비인권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공동체 안의 개인이나 소수 집단 간의 다양한 권리 요구가 충돌할 때에도 그것에 대한 해결이 인권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비 인권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권 교육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권적 감수성을 습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권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인권과 관련된 정서적 공감대를 통해 개개인의 지속적 행동화와 실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교 교육에서 적용해 보면 인권교육은 단순히 교과 중심이나 재량 활동에 머무르는 형식이 아니라 전체 학급 운영과 교실 규칙, 대화법과 교실 환경, 생활지도와 공동체간의 문제 해결 과정 등 교실에서 형성되는 인권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화 공간인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에서는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 공감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인권 교육은 각 개인 인권 의식과 행동화를 위하여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서 그 공동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인권적 공감대를 유지시키는 정당성의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이를 학교 인권 교육에 적용하면 인권 교육은 인권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개념에 대한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공감적인 활동, 즉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한 인권 교육의 접근 모형을 저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새롭게 제시한 인권 교육 모형

← 정서적 공감대를 통해 지속적 행동화와 실천 촉진 -

인권 이해하고 실천하기

인권문제 인식하기

교실 안 인권 만들기

인권 실천의 사회화

인권 공동체 경험하기

학교 안의 인권공동체

가정 안의 인권공동체

기타 모임 안의 인권공동체

→ 개별 인권의식 향상/인권 공동체 정당성 확보→

A. 인권 이해하고 실천하기

개개인의 인권 의식 함양과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습관화를 통한 인권 교육으로 공동체의 인권 행동과 실천에 정당성과 합리적인 준거의 틀을 마련해 줍니다.

1. 인권 문제 인식하기

- 1) 구체적인 인권 현실 알기 (인권 개념과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제시)
 - 인권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 나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예시
- 2) 자신의 인권 체험 이야기하기 (체험적인 인권 인식)
 - 자신이 처한 인권 현실 인식을 통한 인권 인식
- 3) 인권 침해에 현실 공감하기 (정서적 공감하기)
 - 역할극/ 관련 문학작품/영화 보기/ 게임/현장 답사 등 기타 활동적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공감적인
- 4) 인권 침해 요소 확인하기 (토론하기 인지적 측면의 판단력 강화)
 - 인권 침해 사례에서 관련된 인권 요소 확인하기
 - 인권 요소나 침해 요소에 이름 붙이기 게임이나 인권 요소 연결 시키기 등을 활용



- 5) 인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 토의하기 (실천적인 행동 방식 모색)
 - 인권 옹호 태도를 기르기 위한 실천 방안의 모색

2. 교실 안 인권 만들기 (인권 실천 1)

- 1) 교실 안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 찾기
 - 교실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요소 확인하고 이름 붙이기
 - 인권 침해 요소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토론하기
- 2) 교실 안의 인권적 환경 만들기
 - 교실안 공동체 규칙 만들기
 - 인권 의식 신장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토론하기

3. 인권 실천의 사회화 (인권 실천 2)

- 1)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
 - 국내 /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이해
 - 인권 침해 사례를 해결 방법 모색하기
- 2)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실천
 - 편지쓰기
 - 모금 활동
 - 적극적인 자원 활동 등 다양한 인권 실천 프로그램 경험하기

※ 2와 3은 피교육자들의 발달단계나 권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 따라 적용하는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B. 인권 공동체 경험하기¹³⁾

공동체 안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양식 구축하기를 통해 개개인의 인권 의식이 행동화 실천화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

13) 이 부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의 운영방법 및 대안 학교의 운영 방식의 고찰, 트레이커스와 토마스 고든, 하임 기너트 등의 부모교육 교사 교육 방법, 협동학습에서의 인권적인 프로그램의 추출, 칼 로저스와 아들러, 에릭슨 등의 상담원리, 놀이치료 프로그램 및 집단 상담, 기존의 다양한 학급 경영 프로그램에서의 인권적 요소의 추출, 기존 교과 교육에서 사용되어온 프로그램들의 재 검토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 문화 양식 습득 공간인 학교와 가정(그 외 기타 모임 활동 포함)에서 중심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학급경영

- 1) 인권을 기초로 한 학급 운영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2) 집단의 의견 조절하는 방법 습관화하기 (분쟁 해결 방법)
- 3) 대화법 및 토론 방법 등의 습관화
- 4)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 5)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지도

2.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환경

- 1)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 2) 학부모 상담/ 가족 상담 프로그램
- 3) 가정과 학교의 연계되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인권을 기반으로 동아리 활동

- 1) 집단의 의견 조절하는 방법 습관화하기 (분쟁 해결 방법)
- 2) 대화법 및 토론 방법 등의 습관화
- 3)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보급

인권 교육의 목표 (인권 교육의 목표)

현재까지 국내에서 초등교육의 목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인권 교육 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니와 인권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틀거리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인권 교육의 목표는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UN Decades for Human Rights Education)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 교육의 목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 2)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인성과 타고난 존엄성의 충분한 개발



- 3) 관용, 사회적 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민족들간의 우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 4)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5)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국제사회 활동을 촉진
- 6) 분단 국가로서 남북한 공히 평화로운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호 인권 존중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Reardon의 연구결과¹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화 교육의 관점에서 인권 교육의 단계별 교육목표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했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4단계에 걸쳐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 인간존엄성의 이해를 위한 토대 마련

1) 특징 : 최초의 사회화 과정이자 최초의 공식교육

2) 교육내용

- ① 인권에 대한 관심 함양 : 배려(care giving)에 대한 교육
- ② 타인에 대한 존중, 인간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한 인식
- ③ 제한과 규칙의 필요성 : 권리와 책임
- ④ 생태학적 사고 : 생명에 대한 경외, 인간의 존엄 실현의 조건 이해

3) 단계별 교육 목표

- ① 유치원 - 인간은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경외 인간은 같고도 다르다.
- ② 초등학교 1학년 - 규칙은 보호와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규칙의 존중 - 규칙 작성
- ③ 초등학교 2학년 - 아이들에 적합한 세계를 꿈꾸는 것-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
고통과 해악을 중지시키기 위한 책임지기
- ④ 초등학교 3학년 - 지구촌의 다양성 존중
기대와 의무 - 책임과 권리의 관계

14) Reardon, B. A., Educating for Human Dignity: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2. 초등학교 4-6학년 : 인권의 기준과 원리의 소개

1) 특징 : 사회관계와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심
또래 집단, 성 역할에 대한 관심

2) 교육내용

- ① 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해석하는 추상적 사고 능력 함양
- ② 가치의 관점, 정보의 해석에 대한 윤리적 원칙의 적용
- ③ 편견이나 편향된 사고 거부
- ④ 국제적 인권기준의 소개

3) 단계별 교육 목표

- ① 초등학교 4 학년 - 아동의 권리 조약 알기
편견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 ② 초등학교 5 학년 - 유엔인권선언의 이해
행동할 권리 알기
- ③ 초등학교 6 학년 - 아이들과 기아 - 형평권의 침해
인종 차별의 문제 알기 - 아프리카현장

3. 중학교 : 인권 권리와 개념에 관한 숙고와 가치평가

1) 특징 도덕적 배제에 대한 인식 형성 / 현상을 다루고 그 결과를 탐색해야 하는 단계

2) 교육내용

- ① 사려 깊은 가치평가의 능력 함양
- ②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타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③ 가치에 따른 행동의 정치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숙고하기

3) 단계별 교육 목표

- ① 중학교 1 학년 - 왜 인권을 공부하는가 - 논리의 제시
권리와 책임의 관계 - 세계인권선언
- ② 중학교 2 학년 - 난민과 인종주의 - 차별의 문제
창조적인 연극을 통한 인권학습



- ③ 중학교 3 학년 -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인식
책임의 인식 - 인권보호의식 함양

4. 고등학교 : 인권 문제에 직면, 책임지기

1) 특징 청소년에서 청장년으로 가는 과도기 공식교육의 최종적 기간

2) 교육내용

- ① 현실의 인권문제 및 사안들 이해하기
- ② 인권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해하기
- ③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의 활동에 대한 계획수립하기
- ④ 시민 운동에 대한 이해

3) 단계별 교육내용

- ① 고등학교 1 학년 - 식량에 대한 인권(rights to food)이 존재하는가?
인권실현을 위한 행동들
- ② 고등학교 2 학년 - 반인륜적 범죄 - 집단학살
지역인권체제
- ③ 고등학교 3 학년 -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의 비교
도덕적 발달 - 인식에서 헌신으로 변화 , 인권영웅 만들기
지구촌 문제 - 인권과 책임

이러한 국내외의 인권 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인권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초등학교 저학년 인권 교육의 학습목표(1-3학년)

1.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 할 수 있다.
3.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4.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공동체에서의 일어나는 문제를 공평하고 공정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익힌다.



6. 공동체에서의 구성원들간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힌다.
7.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B.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권 교육의 학습목표(4-6학년)

1.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2. 인권의 뜻과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안다.
3. 자신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을 안다.
4.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5. 인권을 지켜온 과정과 역사를 이해한다
6. 다양한 인권 영역이 있음을 알고 각각 그 내용을 이해한다.
7.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 침해 사례를 이해한다.
8.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외면하지 않는다.
9. 인권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깨닫는다.
10. 나의 인권침해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의 경험, 국내에서의 인권침해의 사례와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침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11.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인권적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체험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인권 교육의 실천 방법

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권 교육을 실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현장에서 할수 있는 인권 교육의 실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현장에 인권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교육의 적용 방법

1. 교과 교육 시간에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교과 교육 전 과정에 인권 교육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도덕과나 사회과 영역에서 인권과 관련된다고 생각에서 벗어나 수학이나 과학 등에서 통계자료를 통한 교육, 글쓰기 교육, 음악과 미술 등의 창작활동에서 통합적으로 접근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 교육시간에서 통합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교과 교육에서 인권의 가치와 개념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창의적 재량 활동시간에 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전 학년에 일주일에 2시간의 재량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학교나 학년 담임이 재량으로 창의적 재량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면 인권 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재량활동을 이용한 인권 교육은 지금까지 인권 교사모임(<http://inkwonedu.x-y.net>)의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교육을 재량활동으로 실시하는 학년이나 학교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인권 의식을 인권 교육이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3.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천하는 방법

인권을 주제로 한 특별활동 시간을 만들어 실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재량활동에서처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인권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학년의 아이들이 함께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면은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인권 교육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독립교과로 교육하는 방법

인권을 독립적 교과로 교육하는 방법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권 교육의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 교육의 내용, 교육방법과 교사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학급 운영 전반에서의 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인권 교육이 개개인의 인권 의식과 실천 의지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에서 인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인권 교육은 학교라는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인권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활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의식과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권 교육을 위한 학급경영 방법을 마련하고 생활지도 및 대화법, 분쟁 조정법, 아이들의 자치 활동에 대한 변화, 인권적인 교실 환경 구축, 다양한 학급 프로그램, 인권을 기반으로 한 놀이의 개발 등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학급 운영 전반에서 인권 교육을 실천하려는 고민은 인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고자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영역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사례와 훈련 프로그램들입니다.

6. 캠프 등의 특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진행되는 캠프 등의 주제로 인권을 가지고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뒤뜰 야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몇 종교 단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캠프나 수련회를 하기도 합니다. 인권 운동 사랑방에서 매년 하고 있는 어린이 인권 캠프도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이런 캠프 등의 야외 활동에서 인권 교육을 하는 것은 집중력 있게 인권 교육을 할 수 있고 체험 중심의 인권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쉽고 지속적인 인권 교육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7. 학부모 모임 및 상담 등에서 인권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 (가정에서 인권 교육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아이들에게는 인권적 교실 공동체 뿐 아니라 인권적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교육에 대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접근과 연구 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실천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이 교육하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적 부모 교육 모임, 학부모회의 등에서의 인권 교육에 대한 교육, 구체적인 가족 상담 및 부모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권 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전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교육에 대한 신념 그리고 변칙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인권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인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권 교육 프로그래밍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할 인권 항목이나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할 인권의 개념이나 권리 항목이 무엇인지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일할 권리를 주제로 잡았다면 실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일할 권리와 쉼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 잘못 된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한 편견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비인권적 요소를 없애고 프로그램이 가르치고자 하는 인권 개념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소스를 찾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교육할지 결정하고 정확한 권리의 의미도 확인했다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스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인권 교육 관련 단체에서 자료 찾기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권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프로그램 소스의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활동 프로그램은 사이트 (<http://inkwonedu.x-y.net>)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도안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도 많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권 운동 사랑방이나 국가 인권위원회 등의 인권 단체에서도 인권 교육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교과서 및 교육 자료에 대한 비판적 적용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되 그 내용에서 인권적인 부분으로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오는 비인권적인 요소를 인권적인 요소로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인권적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교과 교육에서는 무심코 비인권적인 요소를 가르치면서 인권교육에서는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기존 교육 프로그램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교육 프로그램 중 기존에 해 왔던 게임이나 놀이 등을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서 적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협동학습 프로그램이나 열린교육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재구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에서의 응용

최근들어 놀이치료 등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심리 치료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고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본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것도 인권 교육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됩니다.

⑤ 새로운 인권 교육프로그램 소스 만들기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인권 교육의 활동적, 체험적, 협동적, 분석적, 비판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인권 교육 프로그램 소스를 손수 창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방법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알려주려는 권리 영역을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인권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3) 소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소스를 구했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① 미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예

- 인권과 관련된 미술 작품의 감상을 통한 인권 교육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등을 이용)
- 인권의 각각의 권리와 관련된 심벌 만들기
- 사람에게 필요한 권리를 가지의 열매로 그리는 인권 나무 그리기
-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협동화 그리기
- 인권 관련 사진을 콜라주 하여 지구마을 만들기
- 실천할 인권 요소나 주장 손바닥 프랑 카드 만들기

② 음악을 이용한 프로그램 예

- 인권을 주제로 한 가사를 가진 노래 감상을 통한 인권 교육
- 기존의 노래의 가사 바꾸어 부르기
- 인권 관련 합창대회

③ 연극을 이용한 프로그램 예

- 인권 침해 사례 통한 역할극
- 몸으로 인권의 각 권리 표현하기



- 인권 문제 관련 연극을 보고 마지막 부분 완성하기
- 인권 문제를 주제로 모의 재판하기
- 장애체험 하기

④ 만화를 이용한 프로그램 예

- 인권 침해와 해결과정에 관한 4칸 만화 만들기
- 만화의 말 풍선 집어넣어 인권적으로 만들기
- 인권 관련 한 컷 만화를 보고 내용 유추해 보기

⑤ 영화를 통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예

- 인권 관련 다큐멘터리 감상하기
- 비디오 카메라로 간단한 인권 CF 만들기
- 영화 및 드라마를 보며 인권 문제 찾아내기
- 인권을 주제 슬라이드 극 만들기

⑥ 놀이를 통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 인권 카드 놀이하기
- 인권 조각 그림 맞추기
- 인권 윗놀이
- 일자리와 관련한 의자 뺏기 놀이

⑦ 국어 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 마술 마이크를 이용한 자기 주장 표현하기와 이해하기
- 인권 관련 편지 쓰기
- 인권과 관련된 시 감상하기
- 인권 주제 동화 읽어주기

⑧ 도표 및 통계 활용

- 인권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한 수학 문제풀기
- 세계 각국의 인권 사항 알아보기

⑨ 기념일이나 행사 기획하기



- 인권 기념일을 통한 아침 자습 지도
- 비폭력 선언하기
- 화해의 날 선포하기

⑩ 체험을 통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 인권 침해 지역 현장 방문 / 조사 활동
- 인권 관련 단체 자원 봉사 활동
- 인권 관련 현장 활동가 초빙 수업

4) 관련 데이터나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이제 인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아이들에게 알려줄 인권 영역과 관련된 통계 자료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나 통계자료들은 유네스코와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 운동 사랑방 등의 인권 단체의 사이트를 방문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5) 인권 교육 방법론에 따라 구조화시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인권 교육프로그램을 구조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화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문제 제기 → 자신의 상황 돌아보기 → 활동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공감하기 → 인권 침해 요소 파악하기 → 해결방법 모색하기 → 구체적인 해결방법 실천하기로 이어지는 인권 교육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인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6) 아이들과 신나게 인권 교육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과 즐겁게 인권 교육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사와 아이들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권 교육을 적용하기 전에 어떠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카무라 코우조가 쓴 “인권 교육의 원칙 및 방법”(中村擴三, 『人權教育の原則と方法』)이란 책을 참조해서 이야기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아이들의 개개인과 소집단의 상황을 살필 것
- 아이들의 협력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살펴 격려할 것



-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할 것
- 프로그램과 교재를 신중히 선택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것
- 가정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할 것
- 학년, 성별 직업 등이 다른 집단과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 해방의 교육(“모든 차별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자립과 연대를 추구하는 교육”)을 구상할 것
- 체계적인 연간계획을 작성할 것

② 학생을 위해 준비 할 것

-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살필 것
- 집단을 조직하는 경험을 갖게 할 것
- 자기를 표현하도록 격려 할 것
- 수업과 활동을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할 것
-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갖게 할 것
-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계획·실천할 수 있게 할 것
- 학급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으로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
- 인권과 관련된 아이들 스스로의 자기의 과제를 인식하게 할 것
- 자립과 연대의 경험을 갖게 할 것
- 학급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할 것

7)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후 평가 및 내용을 모든 인권 선생님들과 공유합니다.

모든 인권 교육이 끝났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나 실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주위에 있는 인권 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권 교육은 확장되어가고 풍부해져 가는 교육이어야 하지 어떤 원칙이 있고 고정된 틀이 있는 교육이어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인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인권 교육이 풍성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적이고 끊임없이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교육!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교육!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권 교육의 목표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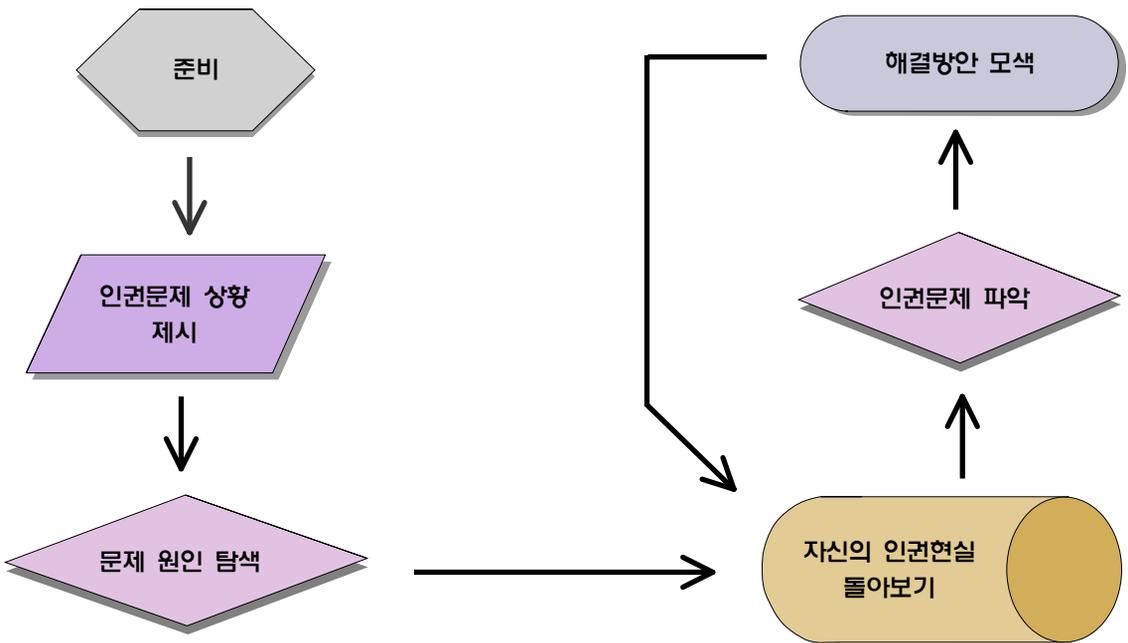


인권교육의 학습 단계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지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인권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을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반드시 학습자가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까지 도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피드백되어 교실 및 학교, 가정환경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 교육 현장에 알맞은 인권교육의 학습단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전달이나 학습자가 인권의식을 신장하는 것 뿐 아니라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의 방법들을 경험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학습단계입니다.



〈그림 1〉 인권교육의 학습단계

(가) 준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합니다.



(나) 인권문제 상황 제시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할 내용에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다) 문제 원인 탐색

제시한 문제의 인권 침해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 해 보고 이야기 할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라) 자신의 인권현실 돌아보기

파악된 인권문제가 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학습자 스스로가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합니다.

(마) 인권문제 파악

학습자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인권 상황을 인식한 후 그것이 인권의 문제인지 아닌지 파악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바) 해결방안 모색

학습자가 스스로 또는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학습자와 집단적으로 인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사) 피드백

학습자는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문제점이나 해결과정에서의 문제를 검토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는 교실과 학교 환경에서 드러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Ⅲ.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란

최근 들어 지식이나 이론이라는 말보다는 애매모호한 의미에 감정이나 감성을 중시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하지만 감수성이란 단어 자체가 규정한



기 어려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지 인권감수성이란 말도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권 감수성을 생각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권 감수성이란 지식과 이론에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해 감정과 정서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어린이 권리 협약이나 세계인권 선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국제 규약이 있는지를 다 외고 있다고 해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문제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지식적인 앎을 넘어 정서적 공감과 민감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 감수성은 단순히 분노나 감정의 폭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인권이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인권침해나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인권의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와 닿지 않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감수성은 인권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고 연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지와 문제 해결력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사회 구조나 법률, 연대해야 할 사람들과 인식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방법을 강구하는 것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권 감수성이란 말은 감수성이란 어휘가 가져오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모습 때문에 상당히 왜곡되어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 감수성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인권 감수성을 가볍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교육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권 감수성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존 생활 패턴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이 지나쳤던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원죄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알아가고 인권문제에 민감해 지면서 가지는 부담감들은 사실 인권을 이야기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부담감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자 하는 노력은 인권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좀 더 생명과 인간의 존엄함을 중시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1)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이름붙이기
- 2) 아이들과 함께 인권 선언문 수정해 보기
- 3) 서명 운동, 퍼포먼스 등의 활동 체험하기

호칭과 언어 사용의 민감성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노동자”는 그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장애인”과 “장애자”라는 말도 있고 요새 한동안 “장애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말들도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르거나 혹은 몇몇의 소수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민감성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종교 수업 거부로 단식까지 했던 강의석씨에 대한 호칭도 군이니 학생이니 여러 가지로 불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근함의 표시로 “의석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강의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이것에 대해 고민한 끝에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의 답변은 “강의석 씨”로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한번도 아이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야”가 되기도 하고 “뒷줄의 줄무늬”가 되기도 하고 “이 새끼”가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별명이나 가명으로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학교 안에서의 언어 사용은 존대말 사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 방송에서 “교실에서 존대말 쓰기”를 주장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쓰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존대말을 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들 때 아이들에게 반말로는 “조용히 해” 또는 더 간단히는 “야!”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존대말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존대말로 화를 내거나 혼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욕을 하거나 스스로 거친 언어로 흥분하게 만드는 것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선생님들은 화가



나면 조교식 말투가 된다고 합니다 즉 “다 와 까”로 이야기 되는 말투를 말합니다. 이러한 어투도 피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혹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말 중에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미혼모라는 표현이나 호모 등의 표현이 그렇고 혼혈인, 종군 위안부란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습관화된 말 들 중에 그가 성적 소수자일 수 있다는 가정은 전혀 없이 “남자(혹은 여자)친구 있냐?” “결혼은 왜 하지 않느냐.”등을 물어 보는 것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할 말 들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1) 학기 초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 만들기
- 2) 존대말 쓰기 선언
- 3) 편견의 용어 인권의 용어로 바꾸어 보기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함

많은 선생님들이 “체벌은 필요악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아이에게 체벌은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정말 체벌은 필요악일까요? 사람에게 형벌로 매를 이용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아이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나 훈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살아남았습니다.

성인에 대한 태형이 금지된 이유는 태형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아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게 하거나 혹은 수십 장의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도 사실 체벌과 다름없습니다.

체벌을 필요악으로 생각하기 전에 저는 교실과 학교에서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서 폭력과 군림의 모습이 아니라 평등과 평화의 모습이 먼저 시작 된다면 학교 폭력이란 말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폭력에 대한 거부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 국가가 개인에게 행하는 폭력, 국가와 국가간의 폭력의 문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1) 체벌 및 폭력 없는 평화 교실 만들기
- 2) 평화 스티커 만들기
- 3) 이라크 및 분쟁지역 아이들에게 평화 편지 보내기
- 4) 갈등 해결 위원회 활동하기
- 5) 스태프제 실시하기

아이들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참여할 주체로 인정

교육부 학교 생활 지침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뽑아놓은 전교 어린이 회장은 그냥 만들어 준 주 생활 목표를 가지고 어른들이 원하는 규칙을 정하는 일을 할 뿐 진정 아이들의 대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학교 운영이나 교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허용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치를 망치고 세상의 말도 안되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세상을 부패하는데 일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른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모두 주지 않는다면 반발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 한번도 자신의 생활 전체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높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린 놈이 뭘 안다고”에 해당되었고 조금만 실수 하여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시키지 않는 거야.”식의 말로 배제 되는 것이 당연한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에서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1) 아이들과 시간표 바꾸어 보기
- 2) 아이들과 수업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 시간 갖기
- 3) 학교운영위원회 아이들 참관하기
- 4) 집에서 가족회의 한 번씩 하도록 숙제 내주기
- 5)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소리판 만들기
- 6) 학교 예산안 검토해 보기
- 7) 학교 규칙가지고 아이들과 교장 면담 요청하기



소수자와 친구되기 또는 소수자 되어보기

장애인을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 소수자를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교육은 소수자의 권리를 다수가 베푸는 시혜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애 체험으로 아이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수자 인권 교육은 이해교육이 아니라 권리 교육이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소중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소수자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적어도 교사들이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수자가 친구라면 내 친구들을 소수자 또는 장애인 아니면 동성애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호칭은 그들뿐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불리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소수 의견이나 취향이 묵살되는 상황에서 소수자를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부분에서 남과 다른 소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제도는 공통되고 동질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인정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내 속의 소수성을 드러내면 그리고 그것이 정당할 수 있다는 것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수자 인권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1) 장애체험을 통한 우리 고장의 고쳐야 할 시설 조사하기
- 2) 이주 노동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 갖기
- 3) 자신의 소수성을 드러내는 자기 소개하기

공부할 권리와 놀 권리

모든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권리가 있지만 쉴 권리 놀 권리도 있습니다. 놀권리라고?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 저것에 권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권리 협약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완수해야 하는 딱딱한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속에서는 쉬는 시간 10분(이것도 상당히 짧습니다)도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도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게임이나 컴퓨터에 빠지고 있는 것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공부할 권리가 있지만 공부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초등학교 전 과목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하라는 것은 사실 억지춘향에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목 수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현재까지 불가능하지만 저는 일종의 도발을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1) 공부하기 싫을 때 쓰는 카드 - 조커
- 2) 과제식 수업을 해보자
- 3) 쉬는 시간 이외에 놀이 시간을 만들어 보자

생활 속에서 인권을 발견하는 기준

인권 감수성이니 생활 속에서 인권 문제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렇다면 도대체 인권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은 뭐가 다르냐 또는 도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는 차이가 없는가? 이런 고민들도 생기실 것입니다. 인권의 기초는 존중이지만 사실 이것이 다른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인권은 공동체에서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래에 인권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적어도 세계인권 선언문, 국제인권협약 등에서 제시되는 인권의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가?

인권에 대한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차이를 반영하여 최소한 지켜야할 인권의 영역을 제시한 것이 바로 유엔 인권 선언문이나 각종 인권 협약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협약들의 내용은 적극적인 인권 신장의 모색이기보다는 각 나라의 이해와 문화적인 차이를 모두 고려해서 적어도 각 나라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국제 협약이나 인권 선언문의 내용은 세계가 인권에 대해 가장 폭넓게 합의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모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협약과 선언의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인권침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고 보장되고 있는가?

인권 선언문이나 협약의 내용을 지킨다고 해서 인권 보장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의 내용은 언제나 확장되어 왔고 그것의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사회제도와 법 제도의 내용과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소수자의 차별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에 기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회적 약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동등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도록 사회 인식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가?

인권의 역사는 예로부터 힘과 권력을 독점하려는 국가나 사회, 개인에 맞서 인간이 평등한 권력과 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의 문제의 판단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권력을 누리고 보장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1) 인권 침해 신문 기사 바꾸어 보기
- 2)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 모습 발견하기



Memo

Memo



권리의 관점으로 본 상담

김 경 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권리의 관점으로 본 상담

김 경 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상담이란 무엇인가?

초등학교 3학년인 현석이는 수업시간에 앞 친구, 옆 친구를 건드리고, 발을 흔들기도 하는 등 집중을 하지 못한다. 조끼리 하는 행동에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이 잘 안 되어 아예 친구들은 현석이를 제쳐 놓는다. 친구들 사이에서 현석이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고 기다리지 못해 무엇이든 먼저 하려고 해서 친구들과 싸움도 잦다.

상담은 최소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무엇인가 해결하기를 원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이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내담자(client)라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상담자(counselor)라 한다.

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과 성장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관계를 통해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상담을 정의한다(이장호, 1982).

둘째, 심리적 조력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상담이란 내담자와 상담자간에 수용적이고 구조화된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의미 있는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내담자 스스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심리적인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원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성수, 1986).

셋째, 발달적 조력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상담은 개인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극복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가진 인적인 자원을 최적의 상태로 발달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이재연, 김영숙 편저, 1993).

이상을 정리하면 상담이란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기초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상담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Ratatori, Gerber, Littor, & Fox, 1986). 복잡하고 급박하게 변화해 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을 돕기 위해 교육 또는 치료적 개입 분야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폭력을 금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동을 괴롭히는 성인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준다.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환경적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제는 심각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확실히 어떤 아동들은 성장과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아동기와 청년기의 발달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치고 자아를 실현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성인이 된다. 또 다른 아동들은 그들의 아동기 역경을 극복하고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아동들은 방임, 학대, 박탈과 다른 부적절한 가정 조건에서도 극복하는 힘을 갖고 있다. 반면에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정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권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출생과 더불어 존재로서 소유하는 자연법적 권리라고 한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강조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 자신이 양육자로서 혹은 후견인으로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거나, 그 역할을 포기할 때, 혹은 가족 전체가 역기능을 하여 아동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때,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찾거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한이 있다. 위기에 처한 아동 즉, 부모의 이혼,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 침해, 박탈당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는 사회가 개입하여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켜 쉼터에 두면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 장면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교수-학습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배우게 될 환경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차원의 구조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차원으로 상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권리존중을 위해 예방적 차원과 치료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상담은 학생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과정이다.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은 학교의 인적, 물적 환경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상담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호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상담의 권리존중

인권은 대체로 성인들만 소유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류 역사를 보면 중세 이후 르네상스에 와서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아동을 노동인력으로 이용하면서 아동의 혹사 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1차세계대전 후 1923년 쟁(Jebb)에 의해 제정된 아동권리선언문이 본격적인 아동권리를 제안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1924년)의 근간이 되었다. 제네바 선언은 모두 5조항¹⁾으로 이루어졌다. 이 선언을 기초로 다시 UN에서 아동의 권리선언(1959)이 있었으며, 국제아동의 해(1979)를 제정하는 등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실질적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합의로 이어져서 아동권리협약을 탄생시키고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기에 이르렀다(안동현, 1999; 정태수, 1991).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UN에 의해서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191개국이 비준하고 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비준했으며 1994년에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두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41조까지는 아동이 가지는 여러 권리를 규정하고, 제42조부터 45조까지는 당사국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제46조부터 54조까지는 비준 서명 가입이 문제와 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다.

이 협약에서 표현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주요 원칙으로 제2조 무차별 원칙, 제3조 아동이익최우선 원칙²⁾ 그리고 제12조 표현의 자유와 참여 원칙이 있다(Wisecarver, 1999).

이 세 원칙은 서구의 이념과 생태문화환경에 적합한 것이다. 생태문화환경이 다른사회에서는 앞서서의 주 원칙 이외에 다른 원칙이 더 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 가령 저개발국가에서는 특히 아동의 생존보장 원칙(제6조)이 아동권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생존보장의 원칙은 국가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제6조 1항)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1) 1조.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정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

2조. 굶주린 아동은 음식을 제공받아야 하고, 병든 아동은 치료받아야 하며,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와주어야 하고, 비행아동은 갱생하도록 하며,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와 원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3조. 아동은 아동이 지닌 재능의 개발이 결국 인류 동포에게 공헌한다는 인식 아래서 양육 되어야 한다.

4조. 아동은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조. 아동은 아동이 지닌 재능의 개발이 결국 인류 동포에게 공헌한다는 인식 아래서 양육 되어야 한다.

2) 국제협약 제3조에서 보이는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모든 아동에 관한 전체 활동에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제3조의 3항으로 2000년 7월 개정 시에 제시되었다.



발달을 보장(제6조 2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생존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인 교육·놀이·여가·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의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호의 권리인 각종 착취와 만행, 가족과의 인위적 격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는 원칙을 포함한다.

그 외에 아동의 생존권리와 발달권리에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사회적 권리를 가진다(제7조 1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분리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만 가능하며 아동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의 분리는 아동 학대·유기의 경우와 부모의 별거 등으로 인해 아동의 거취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한 일이다(제9조 1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제9조 2항).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의 이익이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 한 사람 또는 두 사람과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진다(제9조 3항).

국제협약의 원칙 가운데 무차별 원칙은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능력 유무, 출생이나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제2조 1항). 구별 아니라 부모, 후견인, 가족 구성원들이 신분 활동 의견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행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도록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뜻한다(제2조 2항).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사회복지기관·법원·행정당국이나 입법기관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나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제3조 1항)을 말한다. 국가는 아동의 부모, 후견인이나 아동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조 2항). 국가는 아동에 대한 배려와 책임 있는 기관 및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은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감독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조 3항)

아동의 의사 존중의 원칙은 참여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원칙으로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아동의 능력에 부응해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위 원칙을 토대로 제안된 국제협약은 종래의 아동의 권리가 선언적 특성을 가졌던 것에 비추어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아동을 소극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규정하며,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 의사 표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배근, 1997) 종합하면,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아동의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제6조),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제12조)이라고 하는 4개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상담에서의 권리존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떠한 경우든 아동은 최우선적으로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상담계획 과정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즉, 자신의 평가결과를 들을 권리, 상담에 참여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상담과정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자기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종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성장과 치유를 위해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성장할 때까지 안전하게 양육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학대와 방임 및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 내담자 최우선의 이익 고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 각종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아동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Hodgkim & Newell, 1998).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실천경향을 보면 ‘가족책임 우선’의 이념이 강하다. 대가족제도가 실질적으로 붕괴한 오늘날에도 ‘선 가족 보호 후 사회적 개입’의 이념이 말해주듯, 아동권리에 입각한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과 친족에 있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사회적 개입이 강구되고 있음으로 인해 사실상 아동권리에 부합된 사회적 개입은 불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동이 급속히 변화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성인세상의 복잡함과 근심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아동기를 어떠한 경제적 걱정, 사회적 압력이나 일과 관련된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책임도 필요 없는 시기로 본다. 스스로를 아동옹호자로 여기는 많은 성인들은 아동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아동의 관심사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아동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의 모른다고 믿는다.

그러나 상담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일반성인들과 다르다. 미국심리학회, 상담심리분과, 규정 위원회(1956)는 상담을 어느 단계에서든 개인적 성장의 장애를 극복하고 개인적 자원의 최적의 발달을 획득하려는 개인을 돕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Glossoff & Koprowicz(1990)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관계는 경험, 감정, 행동, 대안,



결과 그리고 목표들의 개인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상담은 평가받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상담은 내담자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권리존중의 관계이다.

아동기가 분명한 한 시기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이것이 아동보호법(child custody law)이나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law)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더 이후의 일이다. 이같은 관심의 고조나 최근에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구분이나 명칭에서부터 다양하고 아직 구체적인 합의도 도출되는 것이 부족하다. 아동을 상담대상으로 여긴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19세기말에 이르러서야 아동심리의 영역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므로(Knopf, 1984), 10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후 아동상담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여 왔다. 모든 분야의 그 출발이 그렇듯이 아동상담분야 역시 초창기에는 성인상담의 원리와 기법이 그대로 아동에게 적용되었었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수준에 성인상담의 기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곧 발견되어 아동에 적합한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동기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틀이 필요했던 것이다(이양희, 2001).

따라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지켜지려면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전문적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 상담자의 개입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존중의 주체가 가족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함께 되며 이중에서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아동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거나 잃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아동권리 신장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내담자 무차별의 권리존중

인권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권리가기 때문에 연령, 성 등등 어떠한 조건으로도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오로지 권리의 대상인 아동이라는 조건만으로 권리가 부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은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체』라는 의미이고, 인격의 주체성이란 『인간을 비인격적 자연과 구별하여 자기자신을 의식하고 자기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스스로를 규율하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형성할 능력의 소유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³⁾

“자연인은 인간일반에게 고유한 가치인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면 누구나 인간으로

3) 권영성, 앞의 책, 377.



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ㄱ) 정신이상자[정신적 장애인(이)]나 기형아도 본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심지어는 “(ㄴ)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실체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생성과정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⁴⁾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규범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제”⁵⁾이다.⁶⁾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때이든, 어떠한 장소에서도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는 평등한 자유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권리협약의 가치이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평등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여야 한다. Glasser는 문제있는 아동과 청소년등의 상담을 통해 선택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러한 자유에 따른 책임의 의무를 강조한 학자로서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제안하고 있다. 즉, 생존의 욕구, 소속의 욕구,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등이다.⁷⁾

일반적 자유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은 주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인데, 엎드려뺨쳐, 운동장 돌기, 팔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학생의 신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체벌의 범주에 해당한다.⁸⁾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또한 학생들 간에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교수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가르치는자·배우는 자라는 수직적 관계로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는 관점을 갖거나 ‘학생에게 인권을 전달하는 자’로서 교사인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학생의 무차별적 권리존중의 가치에 위배된다.

폭력적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 폭력적 부모가 되는 악순환의 문제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재생산 기제 중 하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폭력의 재생산 기제이다.

3) 내담자 의사존중의 원칙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아동의 자기 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수단적 권리로서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참여권의 핵심은 학교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학생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그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식화되어 학생들이 학교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4) 권영성, 앞의 책, 380. 태아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91.

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9, 566.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515.

7) 김인자, 선택이론과 현실요법, 한국심리상담연구소, 2000.

8) 김혜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1994, 8. 체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는 또한 오테얼,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상대, 2005, 29-33.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수업에서는 학생의 참여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거나 주입하는 활동은 그 내용이 아무리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탁월할 지라도 인권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삶의 주체이며 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된다.⁹⁾

자신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설령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그들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학교내 의사결정, 특히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기는 어렵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미성숙하기는 하지만, 신민(臣民)이 아니라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시민이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적용될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이 참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또는 대학교에서 교수조차 제대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이 헌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어쩌면 교사 또는 교수들의 처지가 그러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3. 인권의 관점에서 본 상담

상담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만난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사람 중 훈련된 한 사람은 상담자이다.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담자이다.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용어는 돕는 이, 도움 받는 이, 아동·청소년 성인 또는 인간과 같은 용어가 대신할 수 있다. 학교상담에서는 학생이 어떻게 스스로 돕고, 효과적으로 자신이 되는지를 배우도록 한다. 학교상담은 부모나 교사 그리고 학생자신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학교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생의 생존권이 바탕이 된다. 상담과정을 통해 상담교사는 학생을 보호해 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학생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던 소극적이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권을 존중할 때, 학생으로서 주도적으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삶의 주체이며 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된다.

9) 구정화, ‘아동의 권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2008. 한일 학교인권현황과 인권교육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94-95.



상담은 접수-평가(문제정의)-목표설정-상담기법적용-종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학교상담에 초점을 두어서 권리의 문제는 접수시기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권리의 관점에서 상담을 바라보기 위해 이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 활동: a. 상담접수과정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와 인권존중의 사례
 b. 내담자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와 인권존중의 사례
 c. 상담목표설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인권존중의 사례
 d.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장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인권존중의 사례

상담을 받는 아동은 일차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알기 위해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평가받은 상태에 따라 상담원이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계획을 세워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권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담의 목표

아동과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여행길의 이정표와 같다. 도착점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이 상담의 목표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먼저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의 발달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달 수준을 고려한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동을 상담에 의뢰한 대다수가 교사나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상담에서는 이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담자로 보고 목표 설정 시 이들의 목표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상담의 목표는 는 기본적인 목표, 부모의 목표, 상담자의 목표, 아동의 목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Geldard & Geldard, 2002).

(1) 기본적인 목표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7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고통스러운 정서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고, 정서,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한다.

넷째,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한다.

다섯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변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상담실 이외의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 더 편안하고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발달 이정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화한다.

이상의 기본적인 목표는 아동을 치료하는데 있어 공통적이며 근본적인 목표이면서 상위의 목표이다.

(2) 교사의 목표

교사의 목표는 교사가 학생을 상담에 의뢰할 때 호소하는 주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담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이탈을 반복한다면 교사는 수업에 결석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기대할 것이다.

(3) 상담자의 목표

상담자의 목표는 상담자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교사나 부모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아동의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치료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이탈을 반복한다면 상담자는 학생의 수업참여방해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상담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상담자의 가설과 목표는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 임상 경험 등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발달적 관점과 수업상황과의 상호관련성, 가족상황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아동의 목표

아동이 변화되거나 달라지고 싶은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동의 목표가 된다. 어린 아동이나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아동들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목표를 놀이나 미술이나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기도 한다. 상담자는 아동이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그 목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4가지의 목표들은 서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성인(교사나 부모)들은 자신들이 호소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상담이 효과적이며 종료시점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상담자는 교사나 부모가 호소하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 좀 더 깊은 수준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탈을 자주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결석하지 않는다면 교사나 부모의 목표는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볼 때 수업에 결석은 안하지만 자신에 대한 인식과 존중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불안과 우울이 잠재하고 있어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교사나 부모의 목표와 상담자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나 부모의 목표와 상담자의 목표가 다른 경우 상담자는 교사나 부모와 상담 목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내담아동의 참여를 통해 내담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과 상담자의 상담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상담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아동은 또래친구와의 갈등을 상담에서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상담에서 아동의 욕구가 드러나는 경우 상담자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아동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 한다. 아동상담의 4가지 목표 중 가장 고려되어야 할 목표가 아동의 목표이며 아동을 치료하는 동안 상담자가 설정한 목표는 수정되거나 보류되기도 한다.



Memo

바람직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해법 찾기

이 필 우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바람직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해법 찾기

이 필 우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2010년 9월 17일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5장47조)가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학교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벌금지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 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비추어 특별한 점은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상임직 5명의 학생인권옹호관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한 것은 조례제정에 따른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인권조례가 제정된 단위학교의 생활규정에도 학생인권 옹호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화된 업무 시스템과 담당자가 지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볼 때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 사회 상황과 무관하게 존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가 구성원 간의 이해와 요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과 교원도 갈등의 주요한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왕따, 폭력 등 학생 사이의 갈등은 이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갈등’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도전이고 선택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교권이 확립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소통 노력으로 갈등과 문제점들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심에 교사가 있다. 교사는 단위 학교 현장에서 학교구성원이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학생들과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의 주체는 학교구성원이지만 소통의 눈높이와 목적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하나.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필요성과 현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교육(지도)’¹⁾이라는 용어는 ‘안내(guidance)’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그 뜻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여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이러한 생활교육을 통해 개인은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기실현을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수용과 함께 사회적 자기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지도 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도에 임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도 자기 수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바람직한 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교)생활규정을 현실에 맞게 민주적으로 제·개정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규범문화를 극복하고 시대 가치에 맞는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학교의사결정기구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법제도상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입법례들이 있고, 학생의 자치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생활지도의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칙을 개정·시행하도록 지도해왔다. 그 결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방식²⁾을 고집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생활규정을 두고 적용하는 학교가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담겨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³⁾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권 존중의 기준과 범위는 시대와 사회, 학교라는 특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획일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등한 관계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은 천부적(天賦的) 권리인 데 비해 교권은 교사가 교육을 함에 있어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 문제가 상충

1)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은 교육활동이라고 할 때 ‘생활지도’는 비교과영역 교육활동 중 생활교육의 과정 중 교원이 학생에게 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봐야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생과 교원이 상호소통하는 넓은 의미로써의 ‘생활교육’이다.

2) 학생회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오면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이 의논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거나 인성부(학생부)가 학생의견 및 교사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는 극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이란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이것은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와 함께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기초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중등학교의 시기는 권리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권리 행사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는 교육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함께 이를 위해 소속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또 행위를 통제할 권한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행사도 이와 같은 학교의 고유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제한되고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학생의 권한 행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권리 침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갈등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기준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³⁾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권리의 내용은 자유권(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학생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접근권 등), 복지권(교육에 대한 권리,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 등), 평등권(학생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의미)으로 분류된다. 최근(07.1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본조에 신설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아동권리협약」은 한국도 가입한 당사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인성교육 :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 강조

참된 인간의 품성을 가르치고
개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교육

한 사회가 수용을 요구하는 개인
품성에 대한 교육

사회순응적인 인간상

개인(사회)의 권리와 책임을
같이 요구

한 사회에서 수용되기보다
인권적인가 라는 것에 초점

사회변화지향적인 인간상

학생인권-복지권

아동 보호 관점에서 학생은 어른으로부터 통제·보호·양육·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 교육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인권-평등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차별 근절 조치
- 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학생, 가족형태 가출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 소수정체성에 대한 차별 - 여성
- 소수정체성에 대한 차별 - 장애인
- 소수정체성에 대한 차별 - 이주민 학생
- 소수정체성에 대한 차별 - 성소수자

학생인권-자유권

학생이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신체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정보 접근권



둘.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해법 찾기

1.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학생 간에 일어난 폭력’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학생, 교육,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폭력적 문화가 학교폭력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에 거리를 둠으로써 학교폭력의 본질에 다가서거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거대 학교, 과밀 학급, 과도한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이 지배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빈부 격차의 심화, 가정파괴, 교육기회 상실, 부모들의 지나친 과잉기대와 무관심, 그리고 사회, 가정환경에서 출발하며,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학교에서 발현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2.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실상과 이해부터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폭력적 문화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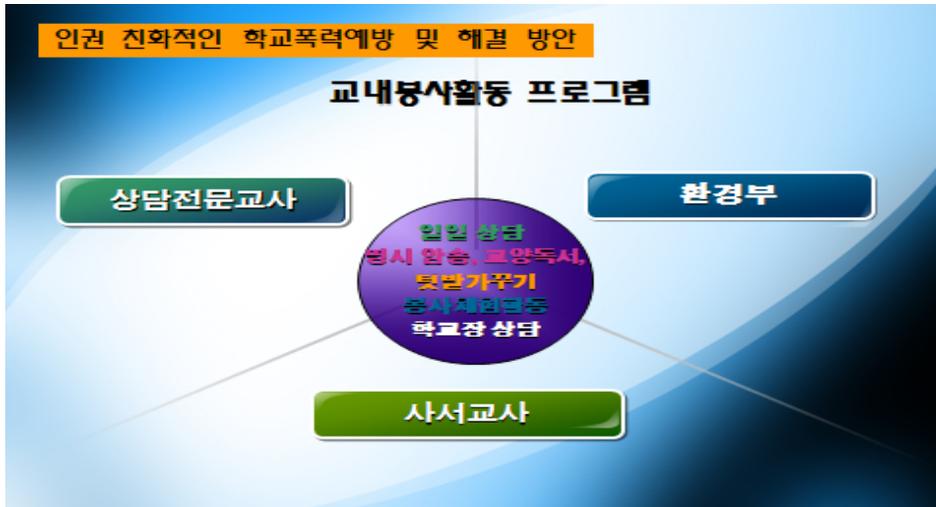
3. 언어폭력의 심각성

언어폭력은 만연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며, 대중매체(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언어폭력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폭력의 대부분은 심리적 갈등을 평화적(대화)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언어폭력에서 신체폭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언어습관은 어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관과 가정, 학교, 사회의 명령적 언어, 지시적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언어폭력은 개인의 창의성, 자율성, 자아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떨어뜨리며, 수동 의존적 인간 형성과 분노와 폭력성을 키우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이나 훈계 과정 중 교원이 학생에게 내뱉는 말 중에는 언어폭력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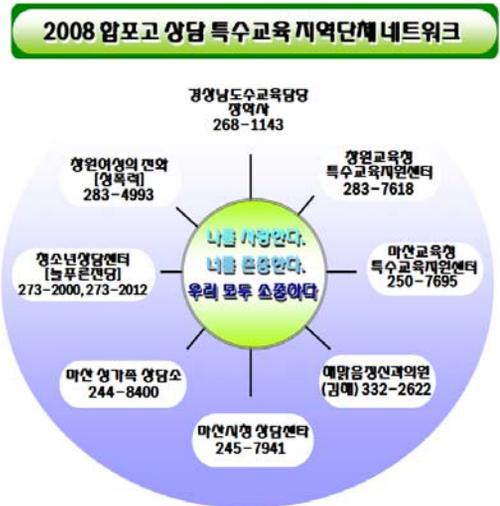
4.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징계절차와 프로그램



5. 이웃과 연계된 지역사회네트워크

단위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학교폭력과 사회봉사 이상의 학생은 도움과 치료 대상이 적합한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조직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학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예방·치료·상담





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성폭력 상담 영역)

※ (사례)

6. 학교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단위학교 내에서 학생과 관련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의회’가 있다.

셋. 안전권과 보건

1. ‘학교안전사고’에서의 안전권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등,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징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안전사고가 교직원의 고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법이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3.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법적 책임(형사, 민사)을 물을 수 없거나 경제적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으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일과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교원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판례를 통해 보면 교원의 책임은 교원의 고의나 과실여부,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있고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4.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대상으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자료’ 등이 있으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이 있으며, 지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공제급여의 제한’,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부당이득의 환수’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통해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학교폭력과 안전공제회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책임이 일부 규정되어 있다. 제16조 5항을 보면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 요구

최근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유명무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례로는 공제회의 회원인 학교장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 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넷.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갈등해결과 소통문화 만들기

학생자치활동의 목적은 학급,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 학생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중심의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개별적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이자 대표체인 학생회의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 해 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인권친화적 환경을 스스로 높여 갈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 (사례)



교육계획안

【강의 제목】 바람직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해법 찾기

구분		내용				
교육일정		교육기관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대상	상담교사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누리고 지켜야 할 '권리와 자유',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설정해 보기 - 학생인권 보호와 학생인권 신장 수행자로서의 전문성 높이기 					
활동목표	① 학생생활(규정)에 나타난 비인권적 내용 중 '인권 친화적 해결과정 찾기' ② '학교폭력'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 보호 및 조치 방안 찾기'					
진행시간	2시간	진행방식	모둠 활동형, 집단 토론형	활동자료	교재	
진행자 역할	모둠별 과제 제시 및 해결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조력 발표, 토론 진행 및 조언					
준비물	ppt, 컴퓨터, 활동지(A1) 16장, 모둠별 컬러펜					
진행 과정	들어 가기	모둠 활동을 위한 준비와 이해 ① 모둠 만들기(8인 인 1모둠, 총 5모둠)와 모둠별 수행과제 선정 - 과제 영역: '건강', '참여', '자유와 책임', '안전', '학교폭력' 등 ② 모둠 활동을 돕기 위한 사례 제시				
	활동	1. 찾아보기 ① 모둠별 과제 수행 - 비인권적 사례 찾기 (예: 내가 근무·활동하는 학교생활규정 중심으로) - 모둠별 토론, 토의를 통한 발표 과제 정하기 ② 모둠별 과제 발표자 및 발표 방식(활동지 이용, 토막극 발표 등 자유) 선정 2. 드러내기 ① 선정된 발표 과제를 통해 본 비인권적 사례 찾기 ②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찾기 3. 풀어내기 ① 발표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비교육적, 비인권적 등) 인식 공유 ② 인권친화적 해결 방안 및 해결 과정 찾기 4. 돕고 나누기 ① 모둠별 발표 및 질문-답변-토론-정리 (전체)				
	마무리	소통의 중심에 서야 할 상담교사 (토론)				
비고						



모듬활동 자료

※ 다음 10개 항목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환경’은 ‘학생이 학교생활 중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의 의미로 쓰였음.

1. 인권보호 환경

- 1-1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 기회를 주는가?
- 1-2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는가?
- 1-3 교원이 학생에게 체벌할 경우 체벌규정에 따라 하는가?(체벌을 행하는 학교)
- 1-4 교원의 부당한 체벌(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구조가 갖추어져 있는가?
- 1-5 징계 학생에 대한 교내외 인성·인권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는가?
- 1-6 징계학생의 이름과 징계내용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개되고 있는가?
- 1-7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가?
- 1-8 집단적 생활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1-9 복장지도 및 생활검열에 상급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 1-10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프로그램 및 시설 포함)?
- 1-11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보호와 배려(교육, 프로그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12 임신, 출산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1-13 시험 등수 결과를 학교 게시판 혹은 교실이나 복도에 공개하는가?
- 1-14 학생회 임원 입후보 자격 등 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 있는가?
- 1-15 성적을 통해 우열반편성을 하고 있는가?
- 1-16 남녀공학(초등 포함)에 있어서 성차별이 있는가(출석부에 남학생 우선 배치 등)?

2. 인권 권리 환경

- 2-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규칙 전반에 대한 안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2 상담교사와 자유로운 상담 및 비밀이 보장되고 있는가?
- 2-3 인권침해 시 신고와 조사, 조치에 대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 2-4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5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6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2-7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8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2-9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2-10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2-11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3. 참여권 환경

- 3-1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 학급회 등)에 따른 기획,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3-2 학생과 직접 관련된 의제에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 3-3 학생회 활동이 지역 학교(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3-4 학교운영(복지, 문화, 자치활동, 선택적 교과 및 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가?
- 3-5 교칙(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가?
- 3-6 그린마일리지제 실행 여부, 상벌점 조항 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실행 학교)
- 3-7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 누구나 교칙 등 학교의 모든 규칙을 볼 수 있는가?
- 3-8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 기준이 있는가?

4. 사생활권 환경

- 4-1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하고 있는가?
- 4-2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규칙을 만들어 사용토록하고 있는가?
- 4-3 일기장, 다이어리, 개인 학습장 등을 열람하고 있는가?
- 4-4 단체급식 비희망 학생(개인 도시락, 대체 식사)를 배려한 장소(아침 포함)가 제공되고 있는가?
- 4-5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4-6 예고 없는 개인소지품 검사 시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가?

5. 자기 결정권(사생활의 자유) 환경

- 5-1 교복에 이름표가 탈부착 가능한가?
- 5-2 머리 모양(두발의 길이 등), 양말, 책가방의 모양과 색상, 신발, 머리핀 등 '학생생활복장 등의 수칙' 개정예 학생회 의사가 반영되는가?
- 5-3 종교생활에 자기 결정권이 있거나 대체활동이 가능한가?



6. 문화 환경

- 6-1 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생회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6-2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등 문화행사 계획 시 학생회의 예산요구 및 편성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6-2 학교 밖 문화행사에 자유롭게(일과 중 제외) 참여할 수 있는가?
- 6-3 학생 수를 고려한 휴식 공간(학생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는가?
- 6-4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온수 사용가능한가?
- 6-5 체육관에 남녀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7. 생활 환경

- 7-1 남녀탈의실이 갖추어져 있는가?
- 7-2 개인 사물함의 크기가 적당한가?
- 7-3 교복(체육복)디자인 변경에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가?
- 7-4 급식소 공간(규모)는 적당한가?
- 7-5 식사 시간은 충분한가(식사 후 수업 전까지의 휴식시간)?
- 7-6 식사 전 손을 씻고 말리는 곳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7-7 월별 식단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 7-8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및 불만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고 시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7-9 학교 기숙사 이용 선택 기준이 성적 중심인가?(기숙학교일 경우)
- 7-10 교실의 냉난방 시설 사용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 7-11 갖추어진 학습기자재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8. 보건 환경

- 8-1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 8-2 보건실 이용에 불편하다면 무엇인가(위치,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등)?
- 8-3 보건실 환경이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9. 안전 환경

- 9-1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시행 규칙’을 숙지하고 있는가?



- 9-2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시행 규칙’에 따른 이용법을 알렸는가?
- 9-3 학교 주변 위험(교통 등) 지역에 대해 안전시설 및 위험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가?
- 9-4 학교안전교육 이루어지고 있는가?
- 9-5 학교 내 주차장과 운동장 구분이 명확하고 지정된 차량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 9-6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시 먼저 행정실을 경유하여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는 안내 및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9-7 응급환자 발생 시 교직원 행동지침을 교육 받았는가?
- 9-8 재난대비훈련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 9-9 계단 등 위험한 곳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가?
- 9-10 계단이 가파르거나 미끄럽지 않은가?
- 9-11 야간에 교문 등 학교 주변이 어둡지 않은가?

10. 건강 환경

- 10-1 각 실의 조도(lux)가 학생과 교사가 이용하는데 알맞은가?
- 10-2 교실 남쪽 창가 커튼이 햇빛을 가리기에 충분한가?
- 10-3 외부 소음으로 인해 수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가?
- 10-4 각 실 인버터 냉난방기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0-5 학습 중 교실 인버터 냉난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 설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 10-6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헬스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10-7 학교음용수 기준(끓여서 식힌 물)에 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가?
- 10-7 화장실(실외 창문 등) 청소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가?



참고 자료

※ 다음 자료는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아동권리협약의 준수, 구현과 관련된-을 돕기 위한 용어 해설, 관련 법률(시행령), 결정례 등을 부분적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참여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여 학습활동, 학생회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을 키워 나가며 고유한 자기문화를 표현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체득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령의 이해, 1988).

정부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초·중등 교육법 제17조에 “학생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단위학교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단위학교에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5~7인 학운위위원 중 학교장(위원장)위촉되며,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관련 학부모와 교원 간 분쟁 및 학생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의보상액 등에 의하지 않고 교사에 대한 추가보상 요구 사건 및 기타 교원 예우 및 교권 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조정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공무원 중 5~10인을 학교장이 위촉하며, 학교폭력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을 조정함.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의회

안전공제회(시·도)에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 법조인, 전문의 등 9~15인을 교육감이 임하며,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조정함.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중 용어 이해

-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교육활동 참여자

동 법 제2조 5.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등

동 시행령 제3조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동 시행령 제9조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 비상탈출구 / 운동장 / 놀이시설 / 실험실습시설 / 체육시설 /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 교원의 책임

민법상 학교안전사고가 교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 즉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상 교사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 에 위반하여 학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대상 ‘요양급여’

동 법 제35조 요양급여의 종류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 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義肢)·의치(義齒),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④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 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차별사례

- *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부적응 문제를 이야기 하며, 일반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특수학교로 가라고 한 경우(전학 강요)
- * 담임선생님이 발달 장애학생을 현장학습, 수련회 등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교내외 교육활동에서의 배제)
- * 한 반 아이가 걸으로는 장애아동을 잘 챙겨주는 척하면서 약 6개월 동안 계속 다리를 발로 차고 못살게 굴었음. 이를 알게 되어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상담을 하자 “어느 정도는 당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고 말한 경우.(장애학생에 대한 모욕과 비하)



* 수업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교수님께서 ‘넌 다음부터 수업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학점은 내가 알아서 줄게’라고 한 경우.(장애인에 대한 무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에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례

- * 도벽이 있는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반의 지적장애아동이 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허위고발을 함. 담임선생은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이 한 행위라고 하면 학부모가 오히려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이를 묵인함. 후에 장애아동의 부모가 확신을 갖고 담임에게 요구하여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힘. 그동안에 장애아동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의 비난을 받음.
- * 아주 적은 금액을 주거나 친절 등으로 위장하고 유인하여서 성폭력을 한 후, 대가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는 등으로 장애 특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노령자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품의 종류)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서비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내용물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2. 정보통신제품

가.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또는 대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나. 반응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다. 시력의 보완 또는 대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라. 색상 식별능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마. 청력의 보완 또는 대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바. 음성입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사.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아. 그 밖에 장애인·노령자의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

장애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영역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적장애, 자폐성, 언어, 청각: 의사소통보조기, 언어훈련S/W, 영상전화기, 음성 증폭기

지체, 뇌병변: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입력보조S/W, 팔받침대, 모니터이동보조기



시각장애: 스크린 리더, 독서 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디스플레이, 바코드리더기, 데이지플레이어, 화면확대S/W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①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 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①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 ①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 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습환경의 소음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학습환경조사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조사항목별 기준 등)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제9조 관련)

1. 조사항목별 기준

가. 소음 및 진동기준

구분	주간 (07:00~18:00)	야간 (18:00~07:00)
소음[dB(A)]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55 이하)
진동[dB(V)]	70 이하	65 이하

※ 소음은 2008년 12월 31까지는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조사방법 및 절차

가. 소음·진동

- 1) 측정점: 학교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
- 2)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



청소년의 노동인권

2010. 2.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제 목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 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하고,
-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 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껌기’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라.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 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에 관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명문화하여 이를 실시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상시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한국 사회에도 일하는 청소년이 많아졌지만, 청소년 노동은 소위 ‘알바’란 이름으로 평가 절하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일반논평 4의 6)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II.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ILO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 ILO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2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및 18,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의 6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실태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최저연령인 만 15세 이상이면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인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일컫는 것으로 한다. 「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제32조 제3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5항). 위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5장 여성과 소년’을 두어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인 것에 비하여, 연소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성인근로자보다 1시간 적은데도,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일하다. 이는 연소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볼 때, 1주 40시간 근로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써 연소자에 대한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2003. 9. 15.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헌법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중대한 흠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다 할 것이므로,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주 5시간을 한도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이 적용되고,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4. 14. 노동부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속히 규제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을 규정하여 휴게시간의 최저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계속된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외형상으론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대법원도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고 판시하고 있다.

‘꺾기’의 휴식은 청소년 근로자가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사업주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근로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에 가깝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노동법제상 ‘호출대기시간’을 주목할 만하다. 호출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처분에 놓여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러 있거나 근로 장소와 근접한 곳에 머물러 있을 의무를 지는 시간으로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꺾기’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위 호출대기시간과 같은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법 기준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또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두고,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간 자체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 특히 청소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헌법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적 보호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17조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통지제도는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에 주야 어느 시간이든 예고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제12조)”과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관계 법 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철저하게 실시할 것(제16조)”이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법 위반 사업주가 사업장감독 전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사업주가 상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감독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위해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내용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노동부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 점검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조문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였을 뿐, ‘꺾기’와 같은 편법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성희롱·산업재해·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항은 아예 점검대상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검대상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다.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이 노동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주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문화하여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4조와 「최저임금법」 제11조 등이 정하고 있는 ‘법령 요지의 게시’ 내지 ‘주지의무’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인데, 위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해당 법령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법 준수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노동법령자료」를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돕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의미도 도모할 수 있다.

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조치의 보완방안

여성 청소년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신하여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소규모(5인 미만 45%, 5~9인 23%)인 점을 고려하면, 홍보물 게시 및 배포 의무의 이행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그 이행을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두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며, 성희롱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의 중대한 법익을 고려하면 더욱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령자료」 책자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 주최 노동법령 교육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교과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수화 및 내실화

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 의식 함양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매우 빈약하며, 부적절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동부의 의뢰에



의해 실시된 『학교 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한국노동교육원, 2006)에 따르면, 사회·도덕·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산직 근로자 기피 등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을 조장하거나 노동조합을 폭력적인 계층으로 묘사하고 집회·단체행동 등에 대하여 서술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정적으로 인식케 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의 목적 및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도 “교육은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일반논평13의 제1항)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노동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Memo

몸과 마음 돌보기

김 미 경 (한국비폭력센터 연구원)



몸과 마음 돌보기

김 미 경 (한국비폭력센터 연구원)



말하기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듣기는 상대의 마음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듣기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는 우리 마음에서 폭력이 가라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본성인 연민(compassion)으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질적인 유대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느낌·욕구·부탁에 기반한 공감적 태도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던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으로 들어주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채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욕구를 인식하면 삶이 변합니다.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혹은 상대에게 부탁하여 충족했을 때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밀한 부부, 가족, 연인 관계, 교육기관/의료기관/사회단체/직장 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그리고 상담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집단/국제간의 갈등과 분쟁 등 어느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는 진실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대화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들어주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토마스 골턴 (PET 창시자)



이렇게 말하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1. 도덕주의적 판단 :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타인의 행동은 틀렸다·나쁘다·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말(비난, 모욕, 분석, 꼬리표)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상 비정상 등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말 - 자신의 가치관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 이를 칭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비난함

“너는 (이기적이어서, 게을러서, 무책임해서, 느려서...) 문제야.”

“그 사람 아주 까다로워.”

(예) 친구가 나보다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면 친구는 ‘소심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반면 내가 친구보다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 친구는 ‘정확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사람’이 된다.

2. 비교하기 : 어떤 기준을 두고 견주는 말. 사람들이 경쟁 대상이 되며 적대감을 가져 두렵고 불안해져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거나 사랑을 느끼기 힘들어진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인해 우울하고 비참해지기도 한다.

“몇 등이나?”, “언니(동생)를 봐라.”, “엄친네 아들은~” “루저” “55사이즈”

3. 강요 :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들.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노가 쌓인다. -윗사람, 힘을 가지 사람의 요구

“시키는 대로 해.”

“다 떡어라.”

4. 상과 벌을 정당화하는 말 : 어떤 행동은 상을 받아야 하고, 어떤 행동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데서 나오는 말 (상과 벌에 기초해서 일하게 되면 훨씬 능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벌과 같은 부정적인 수단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분노와 적대감을 갖게 함



“~을 했으니 맞아도 싸다.”

“별 받아 마땅해.”

5. 책임을 부인하는 말 :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윗사람이 시켜서~”

“규칙이라 어쩔 수 없다.”

<만약 파괴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서 언젠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인류의 멸종 원인은 인간의 잔인성이나 그에 대한 보복행동 등이 아니라, 온순하고 책임감을 결여한 현대인들이 각종 야비한 계율에 비열하게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끔찍한 역사, 또 앞으로 일어날 더 전율할만한 사건의 원인은, 반항하고 길들이기 힘든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데 있다.> - 조르주 베르나노스 -

이게 힘들어요!!!

자칼 언어		기린 언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관찰	
상대의 말 혹은 행동		느낌	
내가 한 말 혹은 행동		욕구	
결과		부탁	



NVC 모델

관찰(observation)

있는 그대로 보고 듣기 ('평가'와 구별)

“내가 _____ 을 보거나, 들었을 때,”

느낌(feeling)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생각'과 구별)

“나는 _____ 느낀다.”

욕구/필요(need)

느낌의 원인 ('수단/방법'과 구별)

“왜냐하면 나는 _____ 이 필요/중요/원하기 때문에”

부탁(request)

구체적, 긍정적, 의문형으로 하기 ('강요'와 구별)



- 연결 부탁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니(생각하니)?”

- 행동 부탁

“_____을 해줄 수 있겠니?”

[예] 교사가 학생에게

관찰 지난 사흘 동안 네가 1교시가 끝난 뒤 등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느낌 걱정이 된다

욕구 그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부탁 (연결부탁) 가능하니?

(행동부탁) 오늘 종례 끝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NVC 모델에 맞추어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소 하던 습관(평가, 생각, 수단/방법, 강요)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의식으로 바뀔 때까지는 어색하더라도 모델을 따라 연습하기 바란다. 그 후에는 상대와 상황에 따라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말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의식 안에 모델의 4가지 요소가 다 내면화되고 그 에너지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위의 사례에서 교사가 “요새 힘든 일 있어?” 하고 물어보는 한마디만으로도 학생에 대한 관심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

1. 관찰 - 있는 그대로 보고 · 듣기

관찰은 한 순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동 혹은 상황을 (도덕주의적 판단이나 비교, 꼬리표 달기 등 평가 없이) **중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면 상대는 보다 개방적으로 듣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연결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p>관찰</p> <p>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 내 감각을 통해 경험한 것.</p>	<p>평가</p> <p>자극에 대한 주관적 해석. 내 감각을 통해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p>
---	---



→ 너 왜 거짓말했어?	→ 네가 말한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달라.
→ 너 왜 도둑질했어?	→ 왜 말하지 않고 가져갔니?
→ 넌 고집불통이야.	→ 내가 제안한 여러 건에 대해 아무 이유를 들지 않고 거절을 했어.
→ 진이는 너무 게을러.	→ 진이는 매일 아침 11시에 일어난다.
→ 동이는 떡보다.	→ 동이는 어제 저녁에 2인분 밥을 먹었다.
→ 넌 나에게 관심이 없어	→ 일주일 동안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

2. 느낌 -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기운

느낌이란 외부나 내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느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존재로,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못한지의 상태를 알려주는 메신저messenger 역할을 한다.

욕구가 충족이 되면 힘이 솟고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우울해진다.

<p>느낌</p> <p>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음.</p>	<p>생각(해석·진단·분석)</p> <p>상대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해석일 수 있다. ‘버림받았다, 비난받았다, 위협적이었다, 속았다, 무시당했다, 모욕당했다, 조종당했다, 오해받았다’ 등. ‘~처럼, ~같이, 등</p>
---	---

☺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감동받은, 몽글한, 감격스런, 벅찬,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
 고마운, 감사한, 즐거운, 유쾌한, 통쾌한, 혼쾌한,
 기쁜, 반가운, 행복한, 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하는, 훈훈한, 정겨운, 정을 느끼는, 친근한
 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상쾌한,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흐뭇한, 홀가분한 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안심이 되는, 차분한, 가벼운 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한 흥미로운,
 매혹된, 재미있는, 끌리는 활기찬, 짜릿한, 신나는, 용기 나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원기가 왕성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들뜨, 희망에 찬, 기분이 들뜨

☹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신경 쓰이는, 뒤숭숭한, 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겁나는, 두려운, 진땀나는, 주눅 든, 불안한, 조바심 나는, 긴장한, 떨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조마조마한, 초
 조한 불편한, 거북한, 겹연쩍은, 곤혹스러운, 멧쩍은,
 쑥스러운, 언짢은, 괴로운, 난처한,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어색한, 찻찻한
 슬픈, 구슬픈, 그리운, 목이 메는,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애끓는, 울적한, 참담한, 처참한,
 한스러운, 비참한, 안타까운, 처연한 서운한, 김빠진, 애석한, 야속한, 낙담한,
 냉담한, 섭섭한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탈한, 막막한, 쓸쓸한, 허한
 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 꿀꿀한, 피곤한, 고단한, 노곤한, 따분한, 맥 빠진,
 귀찮은, 지겨운, 절망스러운, 좌절한, 힘든, 무료한, 성가신, 지친, 심심한
 혐오스런, 밥맛 떨어지는, 질린, 정떨어지는, 혼란스러운, 멍한, 창피한, 놀란, 민망한,
 당혹스런, 부끄러운, 화나는, 끓어오르는, 속상한, 약 오르는, 분한,
 울화가 치미는, 분개한, 억울한, 열 받는

3. 욕구 - 필요로 하는 것, 중요한 것, 가치관, 생활에 생동감을 주는 것.

욕구는 삶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이다. 문화, 관습, 언어, 신념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욕구를 확인하고 표현하여 욕구 차원에서 충분히 서로 연결될 때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욕구



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 **느낌이 자신의 욕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느낌에 책임을 지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주말에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전날 밤에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못가겠다고 한다.

- 만약 그때 몸이 안 좋고 피곤해서 쉬고 싶었다면 그 전화가 반갑고 고마웠을 것이다. (휴식이 필요했으므로)
- 만약 그때 친구와의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약속을 하면 그것이 지켜지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실망스럽고 짜증났을 것이다. (재미, 신뢰, 일관성, 예측가능성, 존중 등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므로)

- 들어줄 때도 상대가 어떤 말로 자기를 표현하든 그 말 뒤에 있는 욕구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방법은 다양하다. 그것을 실천할 때 삶이 풍요로워진다.
- 욕구 자체의 아름다움을 의식하면 그 욕구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욕구 목록표〉

<p>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p> <p>신체적/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 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 운동</p>	<p>놀이/재미 즐거움, 재미, 유머, 흥분</p> <p>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보람, 의미,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하기, 깨달음, 자극, 주관을 가짐(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중요성, 참여, 회복, 효능감, 희망</p> <p>진실성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p>
---	---



<p>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p> <p>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가능성, 정서적 안전, 자기 보호, 일관성, 안정성, 정직, 진실</p>	<p>자기존중, 비전, 꿈</p> <p>아름다움/평화</p> <p>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p> <p>자기구현</p> <p>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p>
--	--

4. 부탁 - 욕구를 의식한 후에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탁을 할 수 있다

(ㄱ) 연결 부탁 - 대화에 초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니?

(ㄴ) 행동 부탁

구체적- 7시 이후에 오게 되면 전화나 문자로

긍정적 - 언제 올 수 있는지

의문형- 알려줄래?

<p>부탁</p> <p>초점이 욕구에 있음. 의도: 모든 사람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 상대의 선택을 수용. 상대가 거절해도 내 욕구가 충족될 다양한 수단/방법 이 있는 것을 믿음.</p>	<p>강요</p> <p>대개 한 가지 수단/방법에 집착. 의도: 상대의 욕구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거절할 경우 벌을 주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다 상대의 선택을 수용하지 않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것을 걱정함.</p>
---	---



5.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선택

◆ 내가 듣기 힘든 말 쓰기

◆ 나의 반응

(1) 자칼 귀 안 :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탓하는 말을 쓰기

(2) 자칼 귀 밖 : 상대의 말을 반박하고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말을 써보기

(3) 기린 귀 안 :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춰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느낌:

나의 욕구:

(4) 기린 귀 밖 : 상대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추측해본다.

이 말을 할 때 상대의 느낌:

상대의 욕구:

어떤 하루

천양희

건설중인 빌딩 꼭대기에
 둥지를 튼 송골매 두 마리가 새끼를 낳아
 다른 곳으로 날아갈 때까지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몇년 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들려와
 나를 감동시키더니
 우리는 언제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니
 며칠 전 신문을 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랐느니
 아파트 공사장에
 까치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
 다른 곳으로 날아갈 때까지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멜버른이 아닌 우리나라 서울에서 들려와
 나를 감동시키느니
 이것이 사랑하며 얻는 길이거니
 득도의 길이거니
 아름다움과 자비는 어디에서나 자랄 수 있는 것

 나,오늘 무우전(無憂殿)에 들고 말았네.



Memo

인권친화적인 선도프로그램 개발

임 동 현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인권친화적인 선도프로그램 개발

임 동 현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1. 딜레마(모둠활동)

1. 두발단속

- 가. 헌법 제12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 나. 청소년은 국민에 속하는 것인가? 아닌가?
- 다. 단정한 외모는 교육의 대상이지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 라. 두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은 어쩔수 없는 것이다?

2. 흡연

- 가. 학교에서 흡연하는 교사에 대한 대책은?
- 나. 학교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는가?
- 다. 왜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를 하지? 그것도 독점으로?

3. 학교폭력

- 가. 왜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폭력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을까?
- 나. 학교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가?
- 다. 싸우다 선생님께 적발되어 학생부에서 매를 맞았다?

4. 체벌

- 가. 육체는 굴욕을 기억한다?
- 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직업은 교사뿐이다.
- 다. 체벌과 관련된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5. 수업 분위기 저해

- 가. 수업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이는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 나.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반복한다.
- 다. 선생님의 지시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 라. 결국 매를 듣거나 협박을 해야하나?

6. 쓰레기 무단투기

- 가. 학교에 자꾸만 쓰레기가 늘어난다.
- 나.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있는 동안 쓰레기투기는 발생한다.
- 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순찰을 할까?
- 라. 학생들 중 교사의 권한을 일부 넘겨받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지도하도록 할까?

7. 절도

- 가. 도둑을 잡으면 그 아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뭐가 될까?
- 나. 도둑을 잡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절도는 늘어날텐데...
- 다. 도둑을 잡자니 소지품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8. 집단 따돌림

- 가.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들을 모두 퇴학시켜버릴까?
- 나. 따돌림 당한 아이도 그럴만 하기는 해...
- 다. 용서해 주면 다시는 따돌림을 하지 않을까?

II. 체벌없는 평화학교

1. 체벌이란?

- 고통을 이용하여 규율을 도모하는 일
- 물리적 학대가 '훈육'의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것



2. 체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 합리적 처벌이다.
- 아동·청소년에 대해 임의로 행사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합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 체벌은 아동학대와는 별개이다.
- 체벌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정상적인 행위이다.
- 체벌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문화의 일부이다.

3. 체벌의 폐해

- 인격적, 신체적 존엄성을 심각히 침해
- 아동기와 성인기에 폭력적인 태도와 행동이 나타남.
- 자긍심 결여, 우울증, 비행 등의 행동 유발

4. 체벌에 대한 단상

-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근절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평등운동의 핵심적인 요소 (과거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 아무리 경미한 체벌이라도 절대 용인하지 않아야만 비로서 우리는 아동을 위하여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존중 받을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와 법으로 보장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합리적’이나 ‘교육적’인 체벌은 없다.
- 어린이는 사람이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아동에 대한 그 어떠한 수준의 폭력도 합법적일 수 없다.
- 아동을 때리는 것은 명백히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일
- 체벌의 위협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아동과의 긍정적·비폭력적 관계 촉진 필요
- 현재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벌제도에서나 교정기관 내 처벌수단으로서 체벌이 금지되어 있음.

※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참여형 프로그램 사례

1. 마음수련 몸 수련

□ 목 적

- 학교생활에서의 여러 부적응 행동에 대하여, 이를 일탈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의 치유 개념으로 접근한다.
- 체험 위주의 취미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활동과정에서 형성되는 레포트를 바탕으로 상담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 추진 내용

- 성장노트(포트폴리오)에 전 과정을 기록 · 관리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부적응 행동에 대한 방어 기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전문 진로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여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멘토 인연 맺기를 통해 학교 내에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선생님과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 다짐 글쓰기, 나눔 글쓰기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의지를 다진다.
- 교내 환경 정화 활동 및 지역 공동체 환경 정화 활동, 노작 활동을 함으로써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 오후에는 자신의 성격과 성향에 따른 취미 찾기 프로그램(사색이 있는 산책, 나의 취미 찾기, 건강한 몸만들기)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취미를 찾을 수 있게 이끌어 준다.

□ 기대 효과

- 교내봉사(선도처분)의 대안적 프로젝트를 연구,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한걸음 진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장노트 만들기



취미 찾기 프로그램 운영(요리 하기)



멘토 화분 만들기



취미 찾기 프로그램(사진 찍기)

IV. 인권친화적 학습프로그램 개발(모듬활동)

1. UN아동권리 협약에 기초한 학습프로그램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비준하였다.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2. 인권 친화적 학교의 개념

- 1)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 생활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 2)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학교내 권력관계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야 하며,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보편화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한국 사회에서의 학생

- 1)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자신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권리주체’로서라기보다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 ‘권리의 향유 주체가 아닌 소극적인 수용자’, ‘독자성이 부족한 존재’로 기성세대들에게 이미지화되어 있다.
- 2) 하지만 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 3) 그러므로 학생의 지위에 대한 개념은 보호의 존재에서 권리 주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4. 학생 인권

- 1)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 2)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써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① 자유권, ②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③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5. 교권과 학생 인권

- 1)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이 이야기 될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 2) 모든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일부 이해될 수 없는 과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식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는 책임지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래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볼 수 없을까?’ 고민에 빠진다.
- 3) 교원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4)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포기되거나 거부(교육포기)되어서도 안 된다.
- 5) 학생에게 부여된 권리만큼 학생에게도 책임이 부여된다.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와 함께 제7조 제2항에서 “학생은 학교의 자율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학생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6.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 1)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함께 교사라는 전문적 지위 합당한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2) 교사의 전문적 지위에 대한 존중과 인정,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정책결정자와 학교행정이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 부여 필요가 있다.
- 3)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이 상생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에 대한 상호대립적 인식에서 상호보완적 인식으로 전환과 함께 창의적 지혜가 필요하다.
- 4) 학생 인권이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에서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그만큼 비례하여 교권 역시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 5)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협력자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합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지침 최종보고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국가인권위원회, 2007]

붙임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안)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1부.



붙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안) 개발 - 요 지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학교에서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일상적인 경험 자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유엔이 권고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4)에서도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인권에 기반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필수적이다. 교육목표와 실천, 학교조직이 인권 가치와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음
- 체벌, 두발·복장 제한, 과도한 학습, 학교폭력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주체간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여 학생·학부모·교사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인권이 증진되는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 정립이 요구됨
-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학교장 등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2007. 12. 14.)이 선언적 조항에 머물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규범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 내용에 대한 구체화 필요
 -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의 4)

□ 추진경과

- 2007. 12.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2007년 연구용역)
 - 용역수행기관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책임: 진영중, 공동연구: 조효제, 류은숙, 배경내외 4인)
- 2008. 3. 5.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작성계획 수립
- 2008. 3.10~20 지침서(용역안)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학계, 학교, 단체, 기관 등 학교인권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12명)
- 2008. 4.1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참석기관·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시·도교육청(서울, 충남, 전북, 경남), 교원·학부모단체(전교조, 교총, 참학), 인권교육 단체 및 전문가 등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이드의 작성방향 및 구성형태, 쟁점사항 논의
- 2008. 4.30. 학생인권조항 신설기념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공동 주최
 - 참석인원 : 관련부처, 교육관리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어린이·청소년단체 등 50여개 기관·단체 참여 네트워크 구축(총 80여명)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등 합의
- 2008. 6.1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 구성 틀(총론부분에 교육 3주체와 구조적, 제도적 학교환경 등을 기술하고, 세부 내용은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교사가 가진 고민과 대안, 우수사례 등을 함께 담으며 구체절차는 별도 장을 두어 기술) 논의
 -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관련 협의체 참석 교육청과 개략적 내용 협의
- 2008. 7.11/15/17/18/23.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방안 모색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9개 시도교육청(대전,광주,강원,경남,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공동 주최
 - 참석 : 5개 권역에서 학교관리자 등 1,000명 참석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 각 기관·단체 및 교육관리자 현장의견 수렴
- 2009. 5/6. UN아동권리협약 제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개최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체벌 금지 및 교육적 대안 모색
- 2009. 12. 15 제5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교과부·시도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안)』주요내용 설명 및 논의
- 2010. 8. 12 제6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관련 주요 업무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II. 인권 친화적 학교의 비전

□ 인권 친화적 학교와 학생인권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 생활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 특히 학교내 권력관계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야 함.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보편화되는 학교를 말함
-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자신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권리주체’로서라기보다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 ‘권리의 향유 주체가 아닌 소극적인 수용자’, ‘독자성이 부족한 존재’로 기성세대들에게 이미지화되어 있음.
 - 하지만 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는 ‘인권의 주체’임
 - 학생의 지위 : 보호의 존재에서 권리 주체로 변화
-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 따라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음.
-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써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① 자유권, ②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③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한편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인권이 이야기 될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
 - 모든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일부 이해될 수 없는 과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식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는 책임지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래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짐
- 교원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



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됨.

-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포기되거나 거부(교육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임
- 학생에게 부여된 권리만큼 학생에게도 책임이 부여됨.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와 함께 제7조 제2항에서 “학생은 학교의 자율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학생의 책임을 규정함

-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함께 교사라는 전문적 지위 합당한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교사의 전문적 지위에 대한 존중과 인정,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함. 교육정책결정자와 학교행정이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 부여 필요
-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이 상생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에 대한 상호대립적 인식에서 상호보완적 인식으로 전환과 함께 창의적 지혜 필요
 - 학생 인권이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에서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그만큼 비례하여 교권 역시 보장된다고 하겠음.
 -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협력자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합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학생인권 살아 숨쉬는 9대 학교 상

○ 학교 1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을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학교 2 :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제시한 의견은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표현의 기회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임.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학교 3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어떤 학생도 어떤 이유로든 부당하게 차별받아서 안 되며,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이를 이해·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함. 특히, 현존하는 혹은 잠재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 함.
- “차별”이라 함은 ①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②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③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말함 (유네스코 교육 차별금지협약 제1조)

○ 학교 4 :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생 중심적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습능력을 타고난 학생이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이 손상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어야 함.
인권 친화적인 학교는 배움과 학습자에 초점을 둔 학교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하는 학교임
- 학생에게 과중한 학습노동, 상급학교 진학에 불모로 잡힌 교육, 체벌과 혹독한 훈육에 의지한 교육,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교육 등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물질적·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임

○ 학교 5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함. 학생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을 존중하며 다양한 자유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등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배우도록 하는 학교이어야 함
-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

○ 학교 6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네트워크가 꽃피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교가 학생의 학습만을 다루는 공간을 넘어서서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총체적 삶을 돌보는 학교이어야 함. 학생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학생이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이어 함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었을 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기관·단체 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면서 지역사회를 비롯한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 학교 7 : 권리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생의 자유권과 사회권, 평등권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통합되어 보장되는 학교이어야 함.
-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학생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 학교 8 :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교사를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 핵심적 주체로 간주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가르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이어 함.
-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도덕적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음.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학생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음
-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이해 수준과 공부 스타일, 학생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대해 이해하며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며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학교 9 : 권리 구제 장치가 마련된 학교

-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는 경험



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한 학교를 말한다.

-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학내 권리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임

Ⅲ.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내용

1. 학생인권관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학교운영규칙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의무 조항이 신설됨(2007년 12월 14일). 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호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학생 징계 시 학생의 재심청구권¹⁾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조항²⁾등이 함께 신설됨
-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생)의 인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18세 이하의 아동의 전반적 인권의 내용을 제시
 -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협약 제1조~제4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1) 제18조의 2(재심청구) ① 제18조 제1항에 다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과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2) 제18조의 3(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정의, 협약의 일반원칙, 구체적 권리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2부(협약 제42조~ 제45조)에서는 비준 절차를 다루고 있음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복지권과 자유권, 평등권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동(학생)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임
 -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임
 -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 “가능한 한 최대 한”이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함
 -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음.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돼야 함.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임

2.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

□ 학생자유권

- 학생이 설사 일반적으로 미숙하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행동의 분야나 종류에 따라서는 발달상 일정한 성숙도와 능력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학생이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autonomy)과 독립적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①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 내용으로 존엄에 합치되는 규율, 학교 규율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학생 의견의 존중, 학교 규율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판단을 돕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 시간 제공, 규율의 공지//강제 학습의 금지, 추가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자신의 동의, 교육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공연 등 부당한 관람 요구 금지//언어폭력의 금지//학교 밖 교육시설의 적절성설, 시설종사자의 태도//학생의 의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약속의 성실한 이행//학생 표현물 활용시 학생 자신의 동의

②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당국과의 면담권 보장,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학생 보호자의 참여 존중//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대표 선출의 민주성, 학생회의 권한 확보, 학생회 활동에 사전·사후 간섭의 금지, 학생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동아리 설립·가입 허가제의 금지,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③ 신체의 자유

-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를 위협받는 경험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질서유지와 정숙 등을 목적으로 신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성폭력 금지와 예방,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학생이 그 표현을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봄, 흡연단속을 이유로 강제 검진이나 의료행위 금지//교직원의 사적 심부름 금지, 행사 도우미 배치, 행사 동원 금지,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기숙사 입소 강요와 부당 규율 금지, 학생 선수의 장기합숙과 부당 규율 금지

④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



국은 학생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동의에 기초한 서약, 양심에 따른 상징의식 거부,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 금지 //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일방적 의사 전달을 위한 소집 금지//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활동 참석과 종교교육 강제 금지, 선교 목적의 권한 남용 금지//특정 도서 등에 대한 제한 금지

⑤ 표현의 자유

-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복장의 자유, 두발의 자유, 이름표와 학교 배지의 착용 강제 금지, 현행 용모 규정의 개정//매체활동의 자유, 매체활동에 대한 지원//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홍보와 선전 활동 보장, 의견 조직 활동 보장, 표현물의 소지와 게시 보장,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공연 내용의 자율적 결정//학내 집회·시위의 자유, 학외 집회·시위의 자유, 집회·시위의 원천 봉쇄 금지//교외 활동의 자유,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⑥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해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일기장 검사의 대안, 편지의 공개 금지, 휴대전화 내용의 열람과 공개 제한//소지품 금지의 제한,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 사적 공간 검사 시 절차, 소지품 압수의 제한, 사적 공간의 확보//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금지//성적 공개 금지, 보호자에 대한 공개 시 전제, 상담 정보의 비밀 유지//CCTV, 알림장비의 설치 규정, 몰래 촬영·녹음의 금지//자율적인 관계 맺기, 갈등상태의 감정 존중

⑦ 정보 접근권

-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진다. 학생은 또한 도서,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



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 등을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국내외적 정보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가고 싶은 학교도서관, 컴퓨터 이용 보장, 인터넷 접근 보장, 정보 활용 교육//참여를 위한 정보, 학교 당국의 투명성

□ 학생복지권

- 아동보호적 관점에서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⑧ 교육에 대한 권리

-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교의 운명 결정에 대한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 교육활동에서의 선택, 다양한 진로 탐색//학급당 학생 수 축소,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 지원 물품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수업 시간외 조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탈학교 선택에 대한 존중//동등한 교육 접근, 경제적 부담의 축소, 입/전학·복학에 대한 개방//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출전횟수와 훈련 제한,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⑨ 건강권

- 학생은 교육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안에서나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나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학생 건강권이 온전히 실



현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침을 정비하고 제반 시설 확충에 힘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 구체적 내용으로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 설비, 학교주변 환경//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치유, 상담활동의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학교 급식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강독//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의 보장//운동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교육의 실시//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련 조치

⑩ 안전권

-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학생 관리 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거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안전을 위한 설비//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한 책임//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수단 제재의 최소화//안전교육의 실시

⑪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만이 우선시되어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쉼,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습부담 강화, 사교육 확대 등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외 휴게공간의 확보, 실내 휴게공간의 확보//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⑫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내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학생이 감당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징계 규정의 정당성, 권리 제한의 최소화, 징계의 남용 금지, 예비 범죄자 대



우 금지//징계절차의 성문화, 무죄 추정 원칙, 차별 없는 징계절차,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 대우 금지, 사려 깊은 조사 절차, 학생의 변론권 보장, 조사·징계 사실의 통보, 재심권의 보장//사건과 징계의 공개 제한, 징계 기록의 보관, 징계기록의 보관 규정 마련//문제해결의 지원, 사건의 은폐·축소 금지

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특별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에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 추가 피해의 예방, 시설 생활 학생에 대한 보살핌//수사기관에 대한 요구, 추가 불이익금지, 관련 사실의 공개 제한//노동할 권리 보장, 권리 구제의 지원, 전문계고 현장실습 감독, 노동인권교육의 실시//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피해 학생의 대한 지원, 피해 학생의 복귀, 추가 불이익 금지, 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 성폭력 규정 성문화,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⑭ 권리를 지킬 권리

-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충분히 실현되는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학생 역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부당한 학교당국이나 교직원의 결정에 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양심의 요청에 따라 처벌·불이익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회복을 도울 권리

□ 학생 평등권

-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⑮ 차별금지

-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는 차별이며 괴롭힘과 불리한 대우 역시 차별이다. 학교당국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반(反)차별 정신의 보편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차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차별 근절 조치//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 학생, 가족형태, 가출학생에 따른(대한) 차별금지//여성에 대해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여성인권교육의 실시,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여성 대표성의 강화, 생리 공결의 보장, 성 폭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남성교사 관여 주의//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의 보장, 편의시설의 제공,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교사를 위한 지원//이주민 학생의 교육 접근권의 보장,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 신상정보의 보호//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아웃팅의 금지, 성적 정체성의 탐색 지원



Memo

부 록



<부록 1>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 유엔 아동권리 협약



●●●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

* 아래는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 **제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 **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 **제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제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 **제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 **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 제 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 제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 제 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 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 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 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 제 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 제 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 **제 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제 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 **제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 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 **제 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제 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 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 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제 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



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제 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제 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제 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피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게 쉼과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포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



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부록 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학생) 관련 주요 결정례



1 아동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관련

(1) 2002. 9. 9.자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 의견

【결정요지】

I.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2) 2004. 8. 16.자 04진인1581 결정 [사증발급 불처분]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한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됨

(3) 2005. 2. 28.자 05진인03 결정 [사증인정서 미발급]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한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을 불허한 것은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신청서의 발급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한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을 불허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10조제1항 및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한 신청한 진정한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함

(4) 2007. 2. 13.자 06진인495 결정 [운동선수 이적불허]

이적 동의서 발급후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은 헌법 제10조 침해이므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체육회장 및 ○○협회장에게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 산하 단체가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선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한국○○연맹회장에게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은 선수의 선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7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5) 2007. 9. 7.자 07진인898 결정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타시도 전출시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피진정인인 ○○초등학교



교 교장이 야구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6) 2007. 12. 14.자 07진인2659·2660·2793 (병합) 결정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등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아침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도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단체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체벌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및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2.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소홀하고, 음주·흡연 등 부적절한 모습을 아동들에게 공공연히 노출하고, 중학생 이상 남자 아동들에게 술병,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아동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3. 피진정인이 전체 생활아동에 대해 부모의 면회를 원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동반 외출·외박을 제한한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4. 또한 아동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아동자치회를 통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바 있고, 부모와 아동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특수



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가 구입해 준 휴대폰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였다고 판단

(7) 2008. 2.28. 자 06진인1951 결정 [과도한 체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학생지도 방법과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아침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도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단채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체벌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제29조 제1호 및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2.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소홀하고, 음주·흡연 등 부적절한 모습을 아동들에게 공공연히 노출하고, 중학생 이상 남자 아동들에게 술병,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제29조 제3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복지법」제40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아동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3. 피진정인이 전체 생활아동에 대해 부모의 면회를 원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동반 외출·외박을 제한한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4. 또한 아동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아동자치회를 통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바 있고, 부모와 아동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가 구입해 준 휴대폰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였다고 판단

(8) 2009. 10. 12. 자 09진인2034 결정 [교사 체벌 등]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



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체벌금지의 학교방침이 있었음에도 임의적 기압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2009. 12. 1.자 09진인2552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을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꿰어앉히고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바닥을 때려서 그 결과로 인하여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사례.

【결정요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제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학교 「생활지도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매는 ‘나무 종류’의 회초리 등으로 ‘신체의 가장 안정한 부위인 둔부’를 상처 나지 않게 때려야 하며, 체벌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를 체벌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와서 무릎을 꿇리고 텐트 폴대로 제작한 매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학교장은 피진정인 담임교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0) 2009. 12. 2.자 09진인3240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이유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에 참여시킬 경우 학생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이탈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학습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음. 기숙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 대한 자율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자율학습 참여를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28조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2 아동의 자유권 및 사생활 보호 관련**1 신체의 자유****(1) 2005. 6. 21.자 04진인3707 결정 [적법절차위반 등]**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인수사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인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 것은 청소년의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모 등의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은 경찰관의 단순한 범죄 제보를 부탁하는 수준이



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는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위 [1],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여성·청소년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경찰직무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청소년계 또는 소년업무 취급부서에서 전담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의 수사시 소년경찰직무규칙의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양할 것을 권고함

(2) 2007. 1. 15.자 06진인943 결정 [학생간 폭행 방치]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 학교측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시○○교육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3) 2008. 2. 13. 자 06진인1254 결정 [고교투수 혹사]

피진정인(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행위는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고교투수 혹사관련 피진정인인 학교 측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 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진술 이외에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2. 아울러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가 무리하게 많은 투구를 함으로써 혹사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연구 또는 자문 등 용역, 의학적·신체적 연구 용역, 논문 등), 성장기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또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실태 조사·연구 등의 투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3.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권고를 한 것임

②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

(1) 2005. 6. 27.자 05진차204-145-119(병합) 결정 [두발제한]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이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



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2.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2) 2008. 2. 28.자 07진인1146 결정 [학교 안 학생의 표현의 자유]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게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물의 표현 범위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3) 2008. 7. 3.자 08진인1739 결정 [집회의 자유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결정요지】**

1. 학생 수업 중 경찰조사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이 「경찰법」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근거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및 「경찰법」제4조에 의한 경찰작용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피해자 부친의 개인정보 취득에 대하여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 피진정인들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및 제8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제17조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4) 2008. 9. 25.자 07진인4150 결정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진술서 징구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에게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학생에게 진술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 및 조기 등교 강요 행위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
3.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진정요지 다항과 같은 차별 행위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③ 사생활 보호 및 프라이버시**(1) 2003. 5. 12.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 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본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 판단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헌법 제31조, 헌법 제37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6조, 개인데이터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OECD가이드라인) 및 전자화된개인정보와관련된규정을위한UN가이드라인과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였음.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임.
2.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
3.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임.

(2) 2004. 6. 4.자 03진인5950 결정 [비밀전학생 신상정보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이 가해자에게 신분 누출 염려 없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딸들의 학교로 찾아와, 피해자와 두 딸이 2003년 3~4차례 이사와 전학을 반복한 피해사실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첫째 딸은 정규 중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나 초등학생인 둘째 딸은 졸업이 안 되는 무적학생 신분으로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니고 있어 중학교 진학 등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와 두 딸이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함

(3) 2004. 9. 6.자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의견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요지】

법안 제11조 제1항 중 실종아동의 조기발견과 신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아동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아동, 검사를 원하는 입양아동으로 규정한 것은 사진식별이 가능한 아동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의 유전자검사 남용의 소지가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와 OECD 가이드라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준에 반하므로 유전자검사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대상 아동의 범주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4) 2004. 12. 27.자 04진인37 결정 [성폭력수사과정]

【결정요지】

- [1]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
- [2]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권고한 사례
- [3] 성폭력사건 수사 관련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5. 3. 25.자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은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



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2] 검사·평가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

(6) 2005. 8. 22.자 05진차37 결정 [소년보호처분전력과 관련한 사생활 자유 침해]

지방검찰청이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등검찰청에 회보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지방검찰청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원 등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조회·회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결정이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회보하지 아니하도록 검찰 조회용 터미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검찰청이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등검찰청에 회보한 것은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각각 독립된 설치근거 및 지휘·감독권에 비추어 서로 외부기관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사 내부기관이라 할지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은 기관 내외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5년 이상 경과한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회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임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검찰청에게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회보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한 소년보호처분 자료 회보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원 등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조회·회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결정이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회보하지 아니하도록 검찰 조회용 터미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권고한 사례

**(7) 2005. 8. 31.자 05진인1055 결정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8) 2005. 12. 26.자 05진인3073 결정 [직권남용]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시○○교육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
2. 피진정기관의 학교장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9) 2006. 4. 10.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5. 12. 26. 초중등교육정책과-2983호로 국가인권위원회로 판단을 의뢰



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위반됨과 아울러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2]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10) 2008. 9. 25.자 07진인4677 결정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

폭행가해자를 찾기 위해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별동의 없이 즉시 학생을 임의로 촬영한 것은 헌법 제10조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측에서 폭행 가해자를 찾는데 있어,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 용모나 복장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개별적 상담을 실시해 볼 수 있었고, 이미 학기 초에 확보된 소속 학생들의 사진이 있어 이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도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학교측은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11) 2008. 11. 13.자 08진인143 결정 [개인정보 열람금지 등]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2.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함.

(12) 2009. 10. 26.자 09진인1542·1543·1545·1546·1547·1548(병합) 결정 [학생명찰 고정부착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은 ‘성명’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7조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함.
2. 피진정인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함.

3 아동의 교육권 관련**(1) 2006. 10. 9.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권고****【결정요지】**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유·초·중·고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 제시,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
- [2]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부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여 삽입하고, 대기환경보전 등을 개정하여 평상시 및 건설공사시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규제기준을 학습환경 보호차원에서 강화할 것을 권고



- [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
-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인허가시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지역 및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교육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 2006. 10. 13.자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환경영향평가항목 조정에서 별표 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표명

【결정요지】

1.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을 제외할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교 교육환경 보장에 미흡하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설 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교육환경 침해 및 통학로 안전성 위협은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서 ‘교육’ 항목을 제외하기보다는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이나 작성지침을 보완하여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3) 2007. 7. 23.자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시행을 권고한 사례로 이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장이 학구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취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별·시기별로 집중하여 적극 홍보하고, ‘취학아동명부’ 작성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말소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주민등록 말소사실 기입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말소 처리 시 자녀의 취학가능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민등록말소자 중에서 재등록이 어려운 자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취학가능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취학아동 명부’ 작성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말소자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확인하도록 권고

(4) 2008. 4. 3. 자 07진인2330 결정 [퇴학처분]

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법령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와 같이 클린스쿨 제(상·별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별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조○○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2. 피진정인은 위 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신입생 선발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관행상 관내 퇴학예정자 전입·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퇴학예정 학생들의 전학(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근거 법령은 없음.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진정인은 위 법령에 따른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함.
3.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인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5) 2008. 8. 13. 자 08진차469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복리시설 배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노후된 교사(校



舎)를 개선하고자 신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현재 고시규정을 들어 특수학교가 외지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신축 또는 개축 예외대상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복리시설 이용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실제 피진정인 환경부 고시규정 제5조에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에 800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동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나 다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고시의 [별표1]에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은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음
2. 진정인 학교 재학생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부자유 등 총 93명으로 이중 63명이 주민등록상 현재 특수학교와 같은 주소지의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 외부 통학생 30명 대부분이 특별대책지역내 인근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같은 대책지역내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소재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함

(6) 2008. 11. 26.자 08진인2598 결정 [전학 강요 등]

운동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동선수의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교육감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

(7) 2010. 1. 25.자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할지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4 참여권 관련

(1) 2005. 9. 28.자 05진차250 결정[부당한 퇴학처분]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한 것은 당해 학생의 학칙위반행위 정도에 비추어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 인정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적법절차의 원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원리로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림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학생 징계시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함.

(2) 2006. 5. 18.자 06진인136 결정 [퇴학 처분]

퇴학처분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학생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관련 적정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진정인의 주장 중 피해자에 대한 1~3차 징계시 진정인에게 아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와의 연락을 강하게 거부한 점, 특히 3차 징계 후 피해자가 진정인의 서명을 위조한 서약서를 제출하며 친구의 연락처를 어머니의 연락처라고 알려주고 친구로 하여금 어머니인 것처럼 교사와 통화하게 하는 등 부모와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점, 피진정인이 학부모 면담 요구서 발송 및 피해자 형과의 면담 등 다른 가능한 연락을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3차 및 4차 징계의 사실관계가 징계사유로 적시된 것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2. 그러나, 징계 시 피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해자에 대해 1~4차 누적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부족한 점, 자운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상의 징계 시 각서·서약서 징구 등과 관련된 규정들이 거의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결국 피진정인이 퇴학처분까지 이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 2006. 6. 28.자 06진인1030 결정 [부당 퇴학]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 당국이 진정인에 대해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이 학교의 생활규정이 정하고 있는 학생 선도원칙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징계대상 학생의 선도 및 교육,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정한의 문제 행위(폭행, 친구 괴롭힘, 상습흡연, 건전하지 못한 금품수수)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징계조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5 차별 및 평등권 관련

(1) 2002. 7. 31.자 01진차3 결정 [크레파스색상의 피부색 차별]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화·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1967년 한국산업규격 제정 당시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본의 공업규격을 단순 번역한 것으로서 특정 색깔의 피부를 가진 인종의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기타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국제화·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 반(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살색이라는 색명은 적당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3. 민간기업인이 특정 색깔의 제품에 살색이라는 표기를 부착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동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2) 2002. 6. 18. 자 02진차22결정 [대학신입생모집과정상 나이차별행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



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대학의 의예과 2002학년도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된다.
2. 대학당국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3. 5. 7.자 02진차70 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보호자 정의의 차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중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함.

(4) 2003. 3. 31.자 02진차80, 130 (병합) 결정 [성적 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헌법상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규정 중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동성애는 정신의학상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신적 장애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발행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가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고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는 없음
2.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행동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바, 이와 같은 성적행동에는 동성애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곧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심의기준(제7조 관련)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5) 2003. 5. 21.자 03진인26 결정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입용·전보 및 입학·전학시에 ‘장애인등’에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6) 2003. 9. 15.자 03진차127 결정 [비학생청소년 차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되기에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보장규정 및 청소년 현장중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청소년의 권리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권고함.

(7) 2004. 2. 16.자 03진차27 결정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 [1]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13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도 반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교총장에게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할 것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함.

**(8) 2005. 9. 28.자 05진차517 결정 [교육기관의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초래되는 폐해는 학생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9) 2005. 10. 24.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2005. 7. 18. 발의)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에 반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31조에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

(10) 2005. 11. 7.자 05진차355 결정 [이혼여성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수급요건]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의 조항이 이혼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현행 호적제도상 부모 이혼 시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어 이혼한 남성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양육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 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1) 2006. 2. 27.자 05진차540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여자축구선수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실업여자축구팀으로 진출하는 것을 불허하는 「선수선발세칙」의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적극)

【결정요지】

피진정인 연맹의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이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를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졸업자만이 실업축구팀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은 동세칙이 대학축구팀의 붕괴를 막고 여자축구선수층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 개인의 희생에 근거하는 침익적 수단을 우선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축구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의 제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판단됨.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함.

(12) 2006. 5. 29.자 06진차37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한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신입생 정원의 10%”라는 기준은 여성해기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산정된 기준이 아니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여학생이 ○○대학교의 학부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의무복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이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성별을 이유로 한 입학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13) 2006. 5. 29.자 05진차523 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초등학교들이 학생의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으로 배정한 후 불참 시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학년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개선할 문제이지 이 사건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자율 배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의 급식지도를 위해 학부모들을 배식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음. 이처럼 학부모를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이 없지 않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예산과 교육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급식배식을 학부모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그 불가피성 또한 전적으로 부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한편,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특정 성에게만 부담을 주는 차별적 제도인가를 살펴보면, 2006. 4. 현재 피진정인 학교들은 급식당번제도를 학부모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배식도우미로 참여케 하는 자원봉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어머니들만이 강제로 급식당번으로 동원된다고 할 수 없고, 한부모 가정, 장애 학부모, 근로여성 등 배식도우미로 활동이 어려운 자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아버지도 배식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어 급식당번제도 자체를 성이나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적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식 및 문화가 자원봉사적 급식당번제도의 운영에서 결과적으로 한쪽 성인 어머니들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개선할 문제이지 이 사건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임.

(14) 2006. 7. 18.자 06직차6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성별 제한에 대하여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 및 개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서도 여성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신입생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2.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키 및 몸무게 요건은 유사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여자 신장 155cm이상 184cm미만”,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 조건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내반슬의 경우도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내반슬 정도 및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여, 육군본부 간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역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15) 2006. 8. 29.자 04진차386 결정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차별]

화교학교를 다니는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등,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화교는 명실상부하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교의 교육권은 충분히 증진되어야 하고, 이 점은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권고된 바 있고, 대만에 있는 한국인학교의 학생들은 대만 정부로부터 그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로 교육받고 그를 사용하며 고유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이 명백하며,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화교학생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16) 2006. 10. 6.자 05진차100, 236, 534, 06진차29, 171 (병합) 결정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임을

**【결정요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수시모집제도라 하더라도 각 대학이 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 지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낳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정규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됨

(17) 2006. 11. 28.자 06진차449 결정 [학급 회장 자격 제한 차별]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량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에 학급 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여자중학교가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제한을 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여자중학교의 『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량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따라서 80점 미만의 학업 성적을 가진 학생은 해당 목적을 달성할 품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학교 측이 이 선출 규정을 정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학급회장 자격을 학업 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측의 주장은 『교육기본법』이 강조하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학교 운영 참여’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음. 이에 따라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여자중학교 교장에게 ‘학업 성적 80점 이상인 자’를 학급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18) 2006. 12. 10.자 06진차41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특수학교가 현재와 같이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아동을 승하차시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있



어서 장애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에게 ○○학교에 등하교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19) 2006. 12. 11.자 06진차96, 107(병합) 결정 [종교 차별]

검정고시를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기보다는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학교의 경우 아직 전면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검정고시 시행요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해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정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교육청이 검정고시 시행일을 일요일로 선정한 것은 진정인 등 기독교인의 종교 행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러한 처분이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등에 비추어 수인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함. 먼저, 진정인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에게 검정고시 응시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청은 2006년부터 상반기 검정고시는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나, 하반기는 평일에 시행하고 있어 일요일에 종교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검정고시 응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또한 평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연 2차례 중 1차례에 한하여 일요일에 검정고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검토하여 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서 그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어려움. 더구나 매회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의 시행을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60여개의 학교 등 교사장과 1,000여개의 교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 고사를 시행하는 부담감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함. 한편 주 5일 근무제와 연동하여 평일과 일요일 외에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을 이 사건 진정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학교의 경우 아직 전면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피진정인 시·도교육감이 2006년 상반기 검정고



시 시행요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해 김정고시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정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20) 2007. 3. 28.자 06진차4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시교육감에게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21) 2008. 1. 14.자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결정요지】

국립중앙도서관의 18세 미만의 초중고생 입관 제한은 비례의 원칙(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서관법」 및 이 사건 협약에 보장된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2) 2008. 1. 28.자 08진차13 결정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실 운영]

정독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독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정독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위주의 학문 풍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를 논외에 두고, 그 과정에서 학교마다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독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그로 인해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인 효과가 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금기시되어야 함.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피진정인은 야간자율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모의고사 시험 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업성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정독실에 입실하여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야기 시켰으며,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일반 교실보다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습 의지, 학습 능력의 향상속도, 생활 환경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소수의 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피진정인은 현재와 같은 정독실 운영방식이 입실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욱 강한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납득시킬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설문 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대다수 학생들이 그로 인한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명백히 이유가 없음.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교내 정독실 입실자격을 특정 성적우수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공교육 서비스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수용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발달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3) 2008. 5. 2.자 08진차116-117(병합) 결정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법률로써 보장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갖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가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우리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에게 우리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4) 2008. 5. 19.자 07진차459 결정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차별]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등 10개 학교장들에게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도교육감에게 현재 피진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적우수자 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도내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25) 2008. 5. 19. 07진차1031 결정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

인재숙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옥천인재숙을 운영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재숙의 선발방식, 운영주체, 운영방법을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기존의 정규 공교육체계와는 별도로 일부 학업성적우수학생만을 위한 특별 공교육체계를 형성, 운영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목표와 지향점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과목의 시험점수로써 관내 학생들을 이분화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그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적 분리교육체계를 구성한 것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인재숙의 운영으로 인하여 ○○군내 학생들이 몇몇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인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그 공공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예산집행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구체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차치하고서라도 위원회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로 인한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공교육 체계가 명시적으로 지향하여야할 목표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임. 그 외에 ○○군은 인재숙 운영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정주인구감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이라는 이 사건 판단의 쟁점과는 관련성이 적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가 인재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진정인은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재숙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되 그 개선방안 중 하나로서 피진정기관이 직접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물인 “○○군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6) 2008. 8. 25.자 08진차158 결정 [성적을 기준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전용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헌법」제31조제1항에 맞게 모든 학생들



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위주의 학문 풍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는 논외에 두기로 하고, 공공교육 시설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면학실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공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함.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그로 인해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가 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자율학습 전용실인 면학실의 입실 대상자를 성적우수자로 한정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학업성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면학실에 입실하여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면학실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의지, 정숙의무 등 면학실 운영규정 준수 의지, 학업개선·발달 정도, 교우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됨

(27) 2008. 11. 10.자 08진차727 결정 [정학 이력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 이용 차별]

정학 이력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입학심사를 다시 실시할 것과 ○○한국학교 학칙에 전입학 불허사유를 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학교 내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숙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전입학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즉,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경중과 추후 반성하는 태도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 조○○의 경우는 ○○한국학교에서 2007. 5.에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후 2007. 9.까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 2일의 정학처



분이 결과적으로 퇴학처분의 효과와 다르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전입학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됨.

나아가 피진정학교의 학칙 제16조(편입학) 제1항은 전입학 허가여부에 대해 전입학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경우에 불허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상해에서 하나뿐인 한국학교에 전입학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한국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 전입학이 불허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의 규정은 있어야 할 것임.

(28) 2009. 7. 6.자 09진차535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해자의 남자 친구’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부모가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학교 측에서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는 압력으로 인하여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을 피해자의 부모가 위원회에 제기하였음. 조사 결과 위원회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학교장과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는 쉬쉬하며 적당히 외면하거나 임신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해결될 상황이 아님. 적극적으로, 제대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학생생활 지도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임. 이 진정사건처럼 임신한 학생을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쉬움.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임. 형법 상 낙태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불법을 부추기며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서구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임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를 즉시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교육감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자퇴를 종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29) 2009. 12. 14.자 09진차889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학생회 담당 부장교사가 학생이 교칙개정 활동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으로 조사결과, 해당교사가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품행이 불량하다거나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설령, 진정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생회장 선거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할 문제이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미리 교사에 의해 후보자가 되는 것 자체가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할 것임.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생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0) 2010. 1. 21.자 09진차1194 사립고등학교의 상설적인 우열반 편성으로 인한 차별

피진정인 학교가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2·3학년 학생들을 ‘평반’과 ‘특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평반 학생들은 2년 내내 특반 학생들과 비교 당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처럼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상설적인 우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를 인용하고 학교장에게 내년학기부터 상설적인 우열반인 ‘평반-특반’ 구분 편성을 중단할 것을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반-특반’ 구분 편성이 금년 1학기부터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수준별 학급편성은 우열반이 아니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대체한 이상적인 학급 편성’



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평반과 특반을 나누어 편성하고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분리 교육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미 ∇∇교육감의 ‘지침’에서도 전과목 총점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을 “우열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과목별로 이동식 수업으로 학습하는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인데, 학생의 과목별 적성에 따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양분하여 항상 별도의 반에서 학습시키는 우열반은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별 이동수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진정인이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학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함.

(31) 2010. 5. 25.자 09진차1218 성별을 이유로 한 미용고등학교 입학 제한

△△미용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갑자기 여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남학생의 미용고등학교 입학에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학교에 향후 신입생 모집시 지원자격을 여학생으로만 한정하지 않도록 관련 학칙과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 전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 학교에서 남학생의 학교생활 지도가 어려운 점은 학교의 운영 방법상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다수의 미용고등학교는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의 선발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데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일반 학교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미용고등학교의 특성상 피진정인 외에 남학생을 선발하는 미용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교육기관 선택 기회가 제약되는 불이익은 경미하다 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진정내용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남학생의 선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함

6 아동보호

- (1) 2003. 12. 8.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

【결정요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 [2]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 [3]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

(2) 2007. 9. 20.자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

소년법개정안중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반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한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 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에서 못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퇴행한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음.
2.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벌책임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 국가들과 스위스에 서는 이를 높이고 있고, 여타의 국가들도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살필 때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음.
3.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심각화가 현행의 14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법 적용연령중 촉법소년의 대상연령은 현행 규정을 유지 할 것을 의견표명

(3) 2009. 9. 24.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가 2009. 7. 23.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내용중에 일부조항에서 아동인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수정이나 보완조치의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거소 지정권’과 ‘징계권’ 규정은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친권자 및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기간 도과 통보시스템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법원의 직권 개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미성년자 의사 존중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사청취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직접 의사 전달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친권자에게만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특별대리인 선임제도와 유명무실한 후견인 감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2010. 3. 22.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한국 사회에도 일하는 근로 청소년이 많아졌지만, 청소년 노동은 소위 ‘알바’란 이름으로 평가 절하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일반논평 4의 6)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노동부장관에게,
 - 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하고,
 -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 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껌기’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라.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 마.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에 관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명문화하여 이를 실시하고,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상시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

7 인권교육

(1) 2002. 10. 28.자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부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개정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이 과거 어떤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점, 그리고 교육부 자체적으로 교과서 질관리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인권존중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자체 개발한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분석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만함.
2. 그러나,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협의할 것을 권고함.
 - (1)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강조하여, 권리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그 해결방안을 질서존중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 이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및 6학년 도덕과,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도덕과의 내용에 일부 드러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 (2)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B 규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 성, 인종, 출생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학년 기술·가정, 고등학교1학년 사회, 도덕, 체육, 미술 등의 교과서의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 (3) 동 B규약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거,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권과 잔혹



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되는 의식을 가지게 할 내용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3. 삽화나 예화에 있어 사회적 편견 등을 고착시키는 등 인권에 반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지적되었는바, 이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 (1) 여성 및 특정직업 비하의 예화와 삽화를 제시한 고등학교 사회과의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는 예문은 적절한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함.
 - (2)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의 ‘선생님의 은혜’ 예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 (3)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이 삽화를 게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특정집단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오해하도록 한 중학교 2학년 도덕과의 삽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 (4)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다수의 사진자료에 특정 상품명이나 드러나 소비자의 권리 중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함.



<부록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예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의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



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0 인권감수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

소 속	직급 (직책)	성 명	이메일주소	비 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부회장	김인숙	insook4114@hanmail.net	한국아동권리학회 부회장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김경희	rosa@mokpo.ac.kr	한국아동권리학회 부회장
수송초등학교	교사	이기규	bear21@hanmail.net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 활동가	배경내	hregang@hanmail.net	경기도 인권교육 조례제정 추진자문위원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 활동가	고은채	dlhre@dlhre.org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교사	이필우	kd0419@hanmail.net	경남교육청생활지도제규정 표준안제정 자문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임동헌	old-Scholar@hanmail.net	광주청소년 인권교육연구회
한국비폭력 대화센터	연구원	김미경	happytalk05@hanmail.net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문화팀)	주무관	이재성	ljslce@mest.go.kr	
대구교육청 Wee센터	실장	홍대우	happysmile@korea.kr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 대표
서울시 강남교육청	실장	김희대	korates@hanmail.net	
서울시 동작교육청	교사	윤용순	ccross153@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김철홍	dodododo@nhrc.go.kr	인권교육 총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사무관	장관식	wkdrhkstlr@humanrights.go.kr	인권교육법 등 제도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담당	김익현	frk815@nhrc.go.kr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담당	이인영	parm96@nhrc.go.kr	교과서 및 인권교육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담당	홍승기	novahong@nhrc.go.kr	인권연구중심대학교

2010 Wee Project 상담교사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인권을 위한·인권을 통한

| 인 쇄 | 2010년 9월

| 발 행 | 2010년 9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76 | F A X | (02) 2125-987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